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완석



녹색성장 연구 13-23-⑦

글로벌법제연구실 | 법제와 정책 연구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연구자 : 서완석 (가천대학교 교수)
Seo, Wan Seok

2013. 9.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정보의 중요성

-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정보도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할 뿐, 주주, 일반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 측면으로의 접근 방법을 피하려는 시도는 아주 미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는 부정적인 것이고,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리스크는 기회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함.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쟁우위 확보, 전략적 대응 차원의 기회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증권 발행인 등과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의 역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II. 주요 내용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 및 브랜드가치의 하락 등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 증권발행인이 고려해야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리스크, 무역장벽, 그리고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있음.

기후변화공시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CDP나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등과 같은 투자자 집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CERES Report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정이나 운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잘 알려진 추세, 책임, 불확실성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함.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미국의 SEC가 해석지침을 이용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임.

-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현재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공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그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바람직한 틀을 제공함
- 외국의 기후변화 공시시스템에 관한 전문자료를 제공함
- 기후변화 공시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및 법제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함

▶ 주제어 : 기후변화 공시제도, CERES Report, 기후변화 리스크, CSA의 환경공시지침, SEC, 기후변화보고체계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information
 - In developed countries, climate change information is recognized materi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vestors by company. but there is little talk about the topic in Korea.
-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 Looking at recent trends, risk is opportunity, therefore, we need to manage it actively, and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risk quantitatively. Thus, we have to regard the risk management as opportunity concept of strengthen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strategic responsiveness.
- The need for climate change disclosure
 - Corporate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remarkably sensitive information to multiple stakeholders surrounding company, and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system will be function to protect investors in securities market.

II. Main Contents

-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influence on company
 -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affect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as well as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ompany, such as the decline in brand value of company and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mpany's risk factors according to climate change
 - The climate change risks entails litigation risk, physical risk, regulation risk, reputation risk, trade barriers, and risk associated with business model.
-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climate change disclosure
 - CDP and CERES require disclosing the risk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 According to the CERES Report, investors want to know well-known trends, responsibility, uncertainty, etc.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that may affect the company's financial and operating conditions.
- Climate Risk Disclosure Scheme of the system
 - It is good to us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should recommend the guideline about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system.

III. Expected Effect

- Until the present time, Climate change disclosure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in our country, thus, this report will provide a desirable framework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 This report may play a role to provide professional material about foreign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system.
-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 a policy. this report will provide a major reference materials about international trends and foreign legislation relating to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system.

➤ **Key Words** : climate change disclosure system, Ceres Report, climate change risk, CSA's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SEC, Climate Change Report Framework(CCRF)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2 장 기후변화의 영향	21
제 1 절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21
제 2 절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28
1. 소송 리스크	29
2. 물리적 리스크	31
3. 규제 리스크	35
4. 평판 리스크	45
5. 무역장벽	47
6.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48
제 3 장 기후변화 공시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	49
제 1 절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	49
제 2 절 CERES Report	54
1. CERES Report의 4가지 범주	54
2. CERES Report의 문제점	60

제 3 절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체계	62
1.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	62
2. 공개기업 보고서에 요구되는 공시	65
3. 중요성	72
4. 평이한 언어에 의한 공시	73
제 4 절 CSA의 환경공시지침	74
1. 배 경	74
2. 중요성 기준	76
3. 환경 위험과 관련 문제	77
4. 리스크 감독과 관리	78
5. 국제회계기준(IFRS)	79
6. 예측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 FLI)의 요구	79
7. 환경공시 관련 지배구조	79
8. 재무 및 자율 공시의 통합	80
제 5 절 기후변화보고체계(CCRF)	81
1. 배경 및 주요 내용	81
2. 서 론	82
3. 공시대상정보의 특성	85
4. 공시내용	90
제 6 절 EU의 기후변화 리스크공시	94
1.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EU의 대응	94
2. EU 지침	96
제 7 절 일 본	99
1. 온난화대책법	99

2. 환경배려활동촉진법	100
3.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한 공시	101
제 4 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103
제 1 절 환경보고서	103
1. 작성원칙	103
2. 작성절차	104
3. 기후변화 관련 작성내용	106
4. 문제점	107
제 2 절 환경정보공개시스템	107
1. 환경정보 공개 대상	108
2. 환경정보 공개·검증절차	108
3. 환경정보공개 항목	108
4. 문제점	111
제 5 장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113
제 1 절 제도 도입의 정당성	113
제 2 절 공시 주체	117
제 3 절 공시대상 정보	118
1. 중요성 요건	118
2. 공시 범주	120
제 4 절 공시 방법	122
1. 강제적 공시와 자율적 공시	122
2. 공시채널	125
3. 기후변화 공시시스템과의 연계	126

제 5 절 공시대상 서류	127
1. 증권신고서에의 기재	128
2. 투자설명서에의 기재	130
3. 정기공시제도를 이용한 기재	130
4. 주요사항보고서에의 기재	130
제 6 절 제도 도입의 방법	132
1. 유권해석에 의한 도입	132
2.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가이드라인	133
제 6 장 맺음말	141
참고문헌	145

제1장 서론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2호),¹⁾ 영국 경제의 심장부인 ‘시티 오브 런던 (City of London)’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기후변화거래소(Climate Exchange PLC)’인 것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1997년 12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함)’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도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기후변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2008년 이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²⁾

기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시는 투자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 경쟁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말하는 기후변화는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예: 통계 분석을 통해)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 변화를 뜻한다. 자연적 변동성 때문이든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이든 시간 경과에 따른 모든 기후변화를 일컫는다. 이 기후변화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말하는 기후변화와는 다르다. UNFCCC에서 뜻하는 기후변화는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직·간접 원인이 있고 그에 더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연적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을 말한다(IPCC 2007 요약 보고서 32쪽).

2)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2011년 8월 15일에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선언하였다.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증권거래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내용정보공시제도는 이처럼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증권에 대한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이미 주주가 된 자가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보유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기 위해서도 기업정보는 필요하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원활화 및 가격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히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기업경영 기반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기업경영자에 대한 통제 기능을 하기도 하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³⁾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정보도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할 뿐, 주주, 일반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 측면으로의 접근 방법을 피하려는 시도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는 부정적이고,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리스크는 기회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쟁우위 확보,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기회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정보 또한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이나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인 공익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라고

3) 서완석,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32-33쪽 참조.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그 권리행사의 실익도 적어지게 될 것이므로 공시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나 주주는 특별한 법률적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정보수집능력도 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현저히 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껍은 결국 사기적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손해로 귀결되게 된다. 이제 기후변화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정보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증권 발행인 등과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의 역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러한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기후변화의 영향

제 1 절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에 관한 전래동화와 같이 날씨의 변화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후변화는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 및 브랜드가치의 하락 등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는 2005년에 ‘Framing Climate Risk in Portfolio Management’⁴⁾라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에너지 가격, 국민소득, 보건, 농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원에서는 법적, 물리적, 윤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Lord Nicholas Stern⁵⁾은 2006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총 579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이하 ‘Stern Review’라 함)’에서⁵⁾ 온실가스의 핵심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를 증가시킨 주범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현재는 430ppm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이 태양열을 붙잡아 두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구의 온도가 0.5℃ 증가하였고, 다가 올 수십 년 내에 최소한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는 한 2050년 혹은 그 이전에 대기 중 이상

4) Wellington F., and A. Sauer, Framing Climate Risk in Portfolio Management,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2005).

5) Nicholas Stern,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화탄소 농도는 550ppm에 이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C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온도가 올라가면 토양과 영구동토층이 품고 있는 탄소가 배출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그리고 Stern Review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 시나리오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마지막 빙하시대보다 딱 5°C 정도만 기온이 상승하였는데도, 5°C의 온도 증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2100년쯤에는 현재보다 약 5°C정도 기온이 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의 물리적인 지형변화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가 빈번해질 것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는 캐나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고위도 지역의 농업 수확을 늘리고 난방비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고, 결국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⁷⁾

또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심각한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물, 먹거리, 건강, 그리고 환경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 물 부족,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안침수 등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만일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매년, 현재, 그리고 영원히 최소한 GDP의 5%를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경제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GDP의 20% 수준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으며, 향후 우리의 행동은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제1차 세계대전과 20세기 초반의 경제 불황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로

6) Stern Review, at 169.

7) Stern Review, at summary of conclusions viii.

사회적, 경제적 대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⁸⁾ 그러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글로벌 GDP의 1% 수준인데,⁹⁾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톤당 85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550ppm 선에서 묶어야 한다고 한다.¹⁰⁾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하 ‘IPCC’라고 함)¹¹⁾ ‘Climate Change 2007(이하 ‘IPCC 2007 보고서’라 함)’¹²⁾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1906년-2005년)간 0.74℃가 증가하였는데, 최근 25년간 온난화 추세는 지난 100년간의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¹³⁾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북극의 해빙과 남극대륙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2009년 5월에는 볼리비아의 차칼타야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고, 투발루(Tuvalu)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침수되면서 급기야 2001년 국토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순차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주변 국가로의 이민을 추진 중에 있다.¹⁴⁾

8) Stern Review, at summary of conclusions vi.

9) Id.

10) Stern Review, at summary of conclusions vii.

11) IPCC는 1988년 구성된 UN산하 국제협의체로서 과학자들과 정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공동으로 1988년에 설립한 유엔산하 국제협의체로서 200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 IPCC. Working Group II,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he 4th Assessment Report, 2007; 5차 보고서는 2013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2007년에 발표된 4차 보고서가 가장 최근 것이라 할 수 있다.

13) IPCC 2007 보고서, Summary for Policymakers, at 5.

14) 투발루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섬나라이다. 투발루의 현황에 대해서는 EBS 지식채널e “투발루와 기후난민” 동영상 참조(http://www.youtube.com/watch?v=_n-ooLKXT4I)

기후변화는 지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독감발병률에 대한 미국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겨울이 따뜻한 해에는 독감의 발병률이 낮지만, 그 다음 겨울에는 독감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1997/1998년 겨울부터 2012/2013년 겨울까지의 미국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의 10개 주의 독감발생률과 날씨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따뜻한 겨울에는 독감 발병률이 낮지만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면역시스템이 약화된 상태에서 다음 독감 유행기를 맞이하게 되고, 겨울이 일찍 시작되면 예방접종시기도 놓치게 되어 독감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¹⁵⁾ 즉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면역시스템 및 행동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이상기후, 지형변화 등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활동에도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비영리기관으로서 영국정부의 지원과 세계 각국의 기관투자자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라 함)라는 환경단체는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하고, 이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3년부터 매년 홈페이지에¹⁶⁾ 공개하고 있다.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2’(이하 ‘2012년 한국보고서’라 함)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8조 달

마지막 방문일 2013. 4. 19).

15) Sherry Towers · Gerardo Chowell · Rasheed Hameed · Matthew Jastrebski · Maryam Khan · Jonathan Meeks · Anuj Mubayi · George Harris , Climate change and influenza: the likelihood of early and severe influenza seasons following warmer than average winters, PLOS Currents Influenza (2013 1. 28) 참조.

16) <https://www.cproject.net>.

러(US)를 운용하는 665개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약 1,86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30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¹⁷⁾

CDP는 매년 2월 1일에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응답 시스템(Online Response System, ORS)을 통해 대상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투자자정보공개요청서(Investor CDP Information Request)를 보내고, 동년 5월 말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¹⁸⁾ 2012년 투자자정보공개요청서의 내용은 ① 기업 경영(Management), ② 위기와 기회(Risks and Opportunities), ③ 온실가스 배출(Emission) 등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①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부문을서 성과가 있었던 경우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사업전략에 기후변화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감축목표 및 계획은 무엇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한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으며, ②에서는 사업 운영, 영업수익, 비용지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혹은 미래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발견했는지의 여부를, 그리고 ③에서는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데이터, 배출량에 대한 상세내역, 총운영비 대비 에너지 비용, 배출성과, 배출권거래 등을 묻고 있다.¹⁹⁾ 해당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CDP는 이를 정리하여 9월부터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²⁰⁾

한편 CDP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업정보의 제공요청 및 공개에 그치지 않고, 2009년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

17) CDP,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2, at 8-11.

18) <https://www.cdproject.net/en-US/Programmes/Pages/CDP-Investors.aspx> (최종 방문일 2013. 4. 22).

19) CDP, Investor CDP 2012 Information Request, 2012, 참조.

20) <https://www.cdproject.net/en-US/Results/Pages/All-Investor-Reports.aspx> (최종 방문일 2013. 4. 22.)

포럼'이라고도 함)과 함께 '기후정보표준화위원회(the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를 만들어 기업의 기후변화관련 정보공개 표준인 기후변화보고체계(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CCRF) 1.0을 작성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CCRF 1.0을 개선한 CCRF 1.1을 공표한 바 있다.²¹⁾ 그리고 2008년에는 협력기업체를 포함하는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CDP 참여 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방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참여기업은 자사는 물론 협력기업체의 탄소경영과 관련된 정보(지배구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이슈와 전략, 온실가스 배출 회계 등)를 공개한다. 협력사의 탄소경영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십의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는 추세다.²²⁾

우리나라는 2008년 시가총액 상위기준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CDP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100개, 2010년 200개, 2011년 200개, 2012년 250개 기업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2012년에는 250개 기업 중 99개 기업이 자사의 탄소정보를 공개했다고 한다.²³⁾ CDP Supply Chain에는 2013년 현재 Dell, IBM, Sony Corporation 등 약 60여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²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2010년에 세계 반도체업계 및 국내 기업 최초로 'CDP Supply Chain Program'에 참여를 선언하고,²⁵⁾ 2011년에는 CDP 조사에 응하여 'Carbon Disclosure Project Supply Chain Report 2011'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²⁶⁾

21) <http://www.cdsb.net/climate-change-reporting-framework/introduction-cdsbs-framework> (최종 방문일 2013. 4. 22). CCRF 1.1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22) 디지털 타임스, 2010년 5월 3일자 기사 참조.

23) CDP,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2, at 6.

24) CDP 홈페이지 내용(<https://www.cdproject.net/en-US/Programmes/Pages/CDP-Supply-Chain.aspx>) 참조.

25) 디지털 타임스, 2010년 5월 3일자 기사 참조.

26)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Supply Chain Report 2011, 참조; 그러나 그 후 2012년 보고서 및 2013년 참여 기업에서 하이닉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1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CDP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후변화가 자사의 위기요소이기도 하지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이유에서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하여 환경소송의 위협에 빠질 수 있고, 각종 규제에 의한 추가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사용 감축을 통한 친환경 생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관련 규제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고, 2015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업의 인재 모집 및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해 세세한 부품이나 심지어 물질 함량까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탄소 라벨링(Carbon Labeling)²⁸⁾ 등 탄소관리체제를 마련해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인 Carbon Trust를 통하여 2007년부터 ‘탄소감축 라벨(Carbon Reduction label)’ 제도를,²⁹⁾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Climate Conscious Label’ 제도를, 스위스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Climatop’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국가에서도 탄소 발자국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³⁰⁾³¹⁾

27)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기업법학회 (2011) 256쪽.

28) 탄소라벨링은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인 원료채취에서부터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 제품사용, 제품의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전 과정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정량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소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국제법학회논문집 제56권 제4호 (2011)) , 168쪽.

29) <http://www.carbon-label.com/> 참조 (최종 방문일 2013. 4. 26).

30) 김경환, 국내외 탄소라벨링 현황과 전망, Global Green Growth Policy 제39호, 국가환경정보센터 (2011), 8쪽.

31) 주요국가의 탄소라벨링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탄소라벨링제도의 일환으로 제품별로 ‘탄소성적 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³²⁾ 동 제도는 기업의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인증제도이다.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은 정부, 생산자, 소비자, 유통사업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인증에 대한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인증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원료물질채취단계, 1차 원료생산단계, 제품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등 제품생산의 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반영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³³⁾ 2013년 4월 현재 운송서비스, 제과류, 가전제품류 등 640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³⁴⁾ 이러한 탄소라벨링제도의 등장으로 원재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자체 생산 단계 뿐만 아니라 SCM(Supply Chain Management) 부문에서도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³⁵⁾

제 2 절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IPCC 2007 보고서는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규제위험(Regulatory risks), 소송위험(Litigational risks), 경쟁위험(Competition risks), 생산위험(Production risks), 평판위험(Reputation risks),

벨링 국제동향 보고서 (2012. 1), 참조.

32) 탄소성적 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와 「탄소성적 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로부터 제도운영을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다.

33) http://www.edp.or.kr/carbon/auth/auth_intro.asp 참조 (최종 방문일 2013. 4. 26).

34) <http://www.edp.or.kr/carbon/list/list.asp> 참조 (최종 방문일 2013. 4. 26).

35) 홍일선, 그린 SCM이 지속가능 기업의 경쟁력,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1. 8. 17), 32쪽 참조.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07년 9월에 기관투자자 그룹,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 SEC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현행 공시규정 및 규칙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³⁶⁾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SEC는 2010년 1월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에 관한 SEC 해석지침’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하여 기업이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 규제적 영향, 국제합의, 규제 또는 사업 트렌드의 간접적 결과 및 물리적 영향 등을 분류하였다.³⁷⁾ 그리고 캐나다의 증권관리위원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 CSA)³⁸⁾는 2010년 10월 27일에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이하 ‘CSA 환경공시지침’이라 함)³⁹⁾에서 증권발행인이 고려해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리스크, 그리고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⁴⁰⁾

1. 소송 리스크

CSA 환경공시지침은 회사가 환경소송의 당사자인지,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예상되는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있는지 등이 바로 회사가 갖게 되는 소송위험이라고

36) Am. Law Inst., Climate Risk Disclosure by the S&P 500, 186 (2007), at ii.

37)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10. 1. 27), at 21-27.

38)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전국적인 단일의 공적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주(州)차원에서 공적규제가 법령과 감독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주마다의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차익과 그 해결을 위하여 협의체인 CSA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는 IIROC라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자본시장 Weekly, 2012-35호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CSA를 ‘캐나다지방증권규제당국’, ‘캐나다증권행정관’, ‘캐나다증권관리국’, ‘캐나다증권감독당국’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협의체라는 본래의 속성을 감안하여 ‘캐나다증권관리위원회’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다.

39) CSA, CSA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2010. 10. 27).

40) Id. at 9-10.

설명하고 있다.⁴¹⁾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가 간의 협약과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대응은 공법적 대응으로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법적 대응은 향후 기후변화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후술하는 도하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투발루 주민,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 등과 일반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IPCC가 자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이 온실가스임을 밝히자, 기후변화의 피해자들은 기후변화에 주요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들을 상대로 거주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⁴²⁾ 에너지산업기업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유형은 해수면 상승, 동토층의 해빙, 장기간의 폭서, 허리케인 등이 있으며,⁴³⁾ 미국 등에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미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자동차회사나 전기발전회사 등을 상대

41) Id. at 9.

42) 박규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6), 208쪽.

43)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사법 제21호, 사법발전재단(2012. 9.) 93-97쪽; David A. Grossman, Warming up to a not-so-radical idea: Tort-based climate change litigation, 28 Column. J. Envtl. L. 1. (2003) 참조.

로 제기한 소송으로는 California vs. General Motors Corporation et al. 사건,⁴⁴⁾ State of Connecticut et al. vs. American Electric Power Company Inc. et al. 사건⁴⁵⁾ 등이 있고, 피해 주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는 Kivalina et al. vs. Exxon Mobil Corporation et al. 사건,⁴⁶⁾ Ned Comer et al. vs. Murphy Oil USA et al. 사건⁴⁷⁾ 등이 있다.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환경 관련 소송들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는 등 실제 피해자의 승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⁴⁸⁾

그러나 기후관련 소송에서 기업이 패한 경우, 기업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유형의 손해만이 아니라 기업평판에 큰 손상을 입는 등 무형의 손해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리스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이 없다는 견해⁴⁹⁾도 있지만, 도하회의에서 기후변화 피해국에 대한 배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제소당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리스크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허리케인이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해수면상승, 농지 경작성의 변화, 물 부족, 산업오염으로 인한 영향 등 기후변화의

44) Case No. C06-05755 MJJ, California vs. General Motors Corporation et al.

45) American Electric Power Company v. Connecticut, 131 S. CT. 2527 (2011)

46) Kivalina, et al. v. ExxonMobil Corp., No. cv-08-1138 (N. D. Cal.).

47) Ned Comer, et al. v. Murphy Oil USA, Inc., et al., No. 1:11CV220-LG-RHW (S.D. Miss. Mar. 20, 2012).

48) 소송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규용, 앞의 논문(주42), 210-215쪽. 참조

49) 위의 논문, 222쪽. 참조

직접적인 영향에서 기인하는 물리적 리스크이다. 물리적 리스크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의 손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및 일반 소비자의 건강문제, 제조물의 이송이나 제조과정을 포함한 작업의 중단(disruptions to operations, including manufacturing operations or the transport of manufactured products), 주요 거래처나 납품업자의 작업 중단, 보험금 청구는 증가하지만 보험증권 발행인과 재보험증권 발행인의 책임은 감소하는 점(increased insurance claims and liabilities for insurance and reinsurance issuers), 보험료와 자기부담금(insurance deductible)의 증가, 또는 보험적용범위(increased insurance premiums and deductibles, or a decrease in the availability or loss of coverage)나 해당 보상범위의 감소,⁵⁰⁾ 가뭄지역의 농업생산성의 감소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 시설유지 및 이전 비용의 증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물리적 리스크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해수면상승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그 변화치를 예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형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산업 분야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지역기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상청이 2011년에 발행한 ‘한국기후변화백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을철 열성 전염병인 쓰쓰가무시와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강원도의 경우, 2006년 도내에서 1·2군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는 1,148명으로 도민 1만 명당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0년 8월에는 대전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기온 상승에 따른 매개곤충과 기생

50) CSA, CSA STAFF NOTICE 51-333 supra note 39, at 9.

층의 확대 및 증가, 대기오염 증가, 알레르기 확산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증가 등⁵¹⁾ 기후변화는 이제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기후변화는 매년 관측사상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해 호우, 가뭄, 산불로 인한 재난·재해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국토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한다.⁵²⁾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예작물의 생산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동해충 및 새로운 고온성 병해충의 확산이 우려되고,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축산물의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⁵³⁾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CO₂ 농도의 상승, 강수량의 변화는 수종별 성장과 목재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여름철 집중강우 증가로 산사태 및 산지토사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산불의 위험성 증가와 대형화가 우려된다. 또한 고온, 가뭄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스트레스와 병해충 취약정도가 증가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적응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어업자원의 남북 분포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고, 아열대 수산생물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⁵⁵⁾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함께 증발량, 유량 및 강우 유출량의 변화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수량 편차의 심화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및 시설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⁵⁶⁾ 기후변화로 인해

51) 기상청, 한국기후변화백서 (2011. 12) 77쪽 참조.

52) 위 백서, 77쪽 참조.

53) 위 백서, 78쪽 참조.

54) 위 백서, 79쪽 참조.

55) 위 백서, 79-80쪽 참조.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으며, 봄꽃의 개화일이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그 순위가 변경되고 있다. 또한 남방계 외래종의 침투가 가속화되어 우리 고유생태계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⁵⁷⁾

이처럼 기후변화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에도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와 질병의 증가,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 급등의 문제 등 여러 위협요소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⁵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1차, 2차, 3차 산업별로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신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2011년 태국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된 폭우로 427명 사망, 약 18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배수시스템의 낙후, 지나친 도시개발과 삼림파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⁵⁹⁾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라니냐도⁶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⁶¹⁾ 태국의 홍수로 인하여 태국의 중부 평원지역이 가장 크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지역에 일본계 완성차업체 및 협력 부품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요타, 혼다 등과 같은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

56) 위 백서, 80쪽 참조.

57) 위 백서, 81쪽 참조.

58) 위 백서, 82쪽 참조.

59) 동아닷컴 2011년 11월 1일자 “泰 홍수전문가 수파라싯 교수 “무능한 정부-낡은 인프라가 부른 人災” 기사(<http://news.donga.com/3/all/20111101/41543218/1>) 참조.

60)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라니냐(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61) 관계부처합동,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2011.12) 7쪽.

산량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사태로 이어져 2011년 11월까지 약 30만대 이상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한다.⁶²⁾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는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의 전기전자업체들이 밀집되어 있고, 태국이 전 세계 하드디스크(HDD) 공급물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세계 2위의 HDD생산국으로 이로 인한 간접피해가 확산되었다고 한다.⁶³⁾ 실제로 삼성, LG 등은 2011년 11월 1일자로 태국 홍수로 인한 부품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해서 PC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⁶⁴⁾

그리하여 후술하는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 그룹(Clouds and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이하 'CERES'라 함)은 기업들에 대하여 기후변화가 그들의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한 회사의 사업과 회사 경영에 대하여 미치게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물리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공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기후가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하여야 하며, 변화된 기후패턴, 해수면의 상승, 물 부족, 지구 온난화,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CERES는 회사가 그러한 물리적 리스크들에 대하여 그 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적응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⁵⁾

3. 규제 리스크

규제적 리스크라 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규제 및 국제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뜻한다. 예

62) 정희식, 태국 홍수와 자연재해 대응 체제 구축의 중요성, 자동차 경제 제446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1.12), 32쪽.

63) 이재호, 태국 대홍수의 피해현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5 no.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 15), 7쪽.

6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0302019932758005; 디지털 타임즈, 2011년 11월 3일자 기사 참조.

65) Am. Law Inst., Climate Risk Disclosure by the S&P 500, 186 (2007) (이하 'CERES Report'), at 23.

를 들어,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 기술, 정치, 과학 분야에서의 변화 발전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의하여 대체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한 생산 및 운송 수요는 증가하게 되지만 장비 유지업이나 시추사업(drilling service) 등 탄소에 근거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규제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규제로, 이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CSA 환경 공시지침에 따르면 규제에는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 보고요건(reporting requirements), 탄소가격시스템(carbon pricing system), 탄소제한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에너지 효율성 기준과 건물 및 구조물 등의 건설 개체에 대한 안전의 최소 허용 수준을 지정하는 규칙의 집합인 building code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⁶⁶⁾ 그리고 그것들에는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외의 보고요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는 환경법이나 규제의 결과로서 그 회사가 직면하는 특별한 위험을 고려하고 포괄적으로(generic) 위험요인을 공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정확한 범위(limit)와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얼마나 정확한 요건들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범위의 추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⁶⁷⁾

그리고 CERES Report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정적 조건이나 경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미 알려진 경향(known trends), 약속(commitments), 그리고 불확실성(uncertainties) 등

66) CSA STAFF NOTICE 51-333, supra note 39, at 9.

67) Id.

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⁶⁸⁾ 그러한 속고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가 그와 같은 재정적 조건이나 경영 조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⁶⁹⁾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은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하여 1985년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가 오스트리아 필라흐에서 개최되고, 1988년 캐나다 써밋트 경제선언 등 수 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친 후,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하 ‘교토의정서’라 함)’가 채택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만들어졌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

68)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27.

69) Jeffrey M. McFarland, Warming up to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Fordham J. Corp. & Fin. L. 281, 319 (2009).

상을 차지할 때 발효되는데,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지만⁷⁰⁾,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OCED국가나 EU 등과 같은 선진국(Annex I)은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제3조)한 점과,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을 도출해낸 점, 그리고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에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어 당장 감축을 이행하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컨대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배출되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견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노력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 있다.⁷¹⁾

그리고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과 온실가스가 지역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

70)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7월 열린 당사자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호주,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 상계치를 연간 1,760만 톤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도쿄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당초의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71)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일반 의무사항과 특별 의무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교토메커니즘을 도출해냈다. 이 방식은 온난화가스 저감능력에 시장기능을 부가한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의무국간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선진국간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DM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후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고,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이 인정되어 상호 Win-Win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 할당된 양보다 추가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추가분을 타국에 배출권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2년 4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최초로 개설된 이래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JI는 교토의정서 제4조에서 당사자들 간에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각 국가 간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투자국의 배출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EU는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하여 EU에게 설정된 교토의정서상의 8% 감축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⁷²⁾

이와 같은 세 가지 제도 이외에도 온실가스 흡수원(Sinks)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온실가스를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포함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흡

72) 이를 EU Bubble이라고 한다.

수(교토의정서 제3조 제3항)와 산림관리 등 인간의 부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흡수(교토의정서 제3조 제4항)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EU는 2005년 1월부터 역내 배출권 거래제도인 EU Emission Trading Scheme을 시행하였다. 일본은 자국내에서의 배출가스의 삭감여지가 점점 감소되어감에 따라 2004년 12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얻기 위해 ‘일본온난화가스 삭감기금(JGRF)’를 설립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그 효력이 2012년에 만료되고,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 여러 차례의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칸쿤 회의)에서 제15차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회의)에서 정치적 합의수준에 이르렀던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녹색기후기금의 조성과 긴급지원금 300억 달러의 집행을 합의한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이 공식적인 유엔체제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칸쿤 회의에서도 교토의정서의 기간 연장여부와 의무감축국 목표설정 등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더반 회의)에서는 칸쿤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결정되지 못한 교토의정서의 연장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한 더반 Platform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하회의)에서는 ‘도하 기후결정문(The Doha Climate

Gateway)’을 채택하여 기존에 더반 Platform에서 2020년까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⁷³⁾

이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2년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⁷⁴⁾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⁷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온실가스에 관한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2억 5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나 그 후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6억 1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준년도 대비 144%가 증가하였으며, 순위로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7위를 기록하였다.⁷⁶⁾ 교토의정서가 칸쿤 합의문에 따라 2020년까지 그 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게 되었다.

73) UN, FCCC/CP/2012/8/Add.1, at 21.

74) Annex I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구권,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Annex II 국가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 Annex I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 Annex II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75) Annex B 국가는 교토의정서에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합의한 국가들로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6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2 report), July.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대상 국가들이 탄소배출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협약의 이행의무 부담국가에 존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기업들이 공급업체에게 탄소배출저감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200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공급업체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⁷⁷⁾ 이에 관해서는 이하의 무역장벽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 규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구축을 하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그 이행 조치로 2009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 및 실천과제를 마련하게 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11월 제6차 녹색위성장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27% 또는 30%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으며, 2009년 12월 29일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4조 제2항),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77) 장현숙 외, 해외 바이어의 탄소정보 요구추세 및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10. 11) 참조.

하여야 하고(제40조), 그 이행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42조 제5항).

또한 사업자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환경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제44조).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이라 함)이 2013년 3월 23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년),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12년)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의 주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5년 단위로 계획기간이 설정된다(제2조 제4호). 다만 제도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제1차 계획기간(2015. 1. 1 ~ 2017. 12. 31)과 제2차 계획기간(2018. 1. 1 ~ 2020. 12. 31)은 각 3년으로 되어 있다(2012. 5. 14 부칙 제2조). 그리고 각 계획기간별로 적용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고 함)’은 환경부장관이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데(제5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차 계획기간이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므로 첫 번째 할당계획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첫 할당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각 업체에게 얼마만큼씩 할당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할당대상 업체라고 하고 이는 의무적 참여업체, 자발적 참여업체, 신규참여업체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적 참여업체는 관리업체⁷⁸⁾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tCO₂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tCO₂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이고(제8조1항 제1호), 자발적 참여업체는 의무적 참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이다. 신규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의무적 참여업체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뜻한다. 또한 최근 3년간이라는 기준이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뜻하기(시행령 제6조 제1항) 때문에 2015년이 첫 계획기간인 점을 고려한다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기준 시점으로 이미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업체 수는 2013년 1월 기준으로 580개이며 세부상황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관리업체 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0	485	580
농업·축산	26	26	29
산업·발전	378	382	450
건물·교통	45	51	67
폐기물	21	26	34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자료기준('13. 1. 14)⁷⁹⁾

78)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⑤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관리업체 중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 의무적 참여업체는 약 500여개 업체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⁸⁰⁾ 할당대상 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할당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할당대상 업체는 온실가스감축 의무 및 보고서작성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4. 평판 리스크

평판 리스크라 함은 기업의 평판이 나빠짐으로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굳어진 믿음과 의견, 브랜드 이미지의 총체를 의미한다. 평판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다.⁸¹⁾

기후변화와 관련한 평판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외부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

79) 환경공단 보도자료,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해설서(2013. 1. 25) 붙임 1 참조.

80) 위의 보도자료, 2쪽.

81) 김경환·이종욱, 평판리스크와 윤리경영의 역할,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0. 3. 29), 1쪽 참조.

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뜻한다. 평판위험은 B2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게 영향이 더욱 큰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은 경영자들보다 제품의 품질이나 회사의 장래 등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업이나 경영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⁸²⁾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서는 국민은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제1항),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제2항),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정책으로도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라벨링 제도, 그린카드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녹색소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도 녹색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평판이 나빠지게 되고, 평판의 악화는 해당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평판리스크에 대한 유의미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강매, 포스코 계열사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건 등 일명 ‘나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유업의 경우 4월 30일 종가가 116만 5천원이었으나, 영업사원의 막말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사건이 발생하자 5월 13일 종가가 98만원으로 약 14%가량 하락하였다.⁸³⁾ SNS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많은 기업관련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평판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 파괴력

82) 박헌준 외 3명, 기업평판과 재무성과의 관계, 인사·조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인사·조직학회 (2004), 24쪽.

83) 한국일보, 2013년 5월 14일자 기사, ‘나쁜 기업’ 주식시장서 심판… 신 갑을시대’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1403321984010.htm>).

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나쁜 기업의 수익악화를 예상하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평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간접 리스크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업의 성격 및 대중의 인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사회적 평판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CSA 환경공시지침은 평판 리스크 부문에서, 발행인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발행인이 브랜드 가치, 소비자 신뢰, 종업원의 충성도, 금융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발행인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인가(regulatory approval)를 얻는 일과 같은 핵심 무형 자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회사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기타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발행인의 영업활동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⁸⁴⁾

5. 무역장벽

앞서 규제리스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세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반회의의 결과로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직접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우리의 산업구조가 수출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나라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와 자발적 감축유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미 공급업체에 탄소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한

84) CSA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supra note 39, at 10.

다.⁸⁵⁾ 예를 들어, 세계적인 컴퓨터 생산업체인 Dell의 경우 ‘CDP Suply Chain Program’에 참여하면서 2009년에 협력업체들에게 탄소배출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급업체에서 배제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⁸⁶⁾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가 사업장 중심에서 탄소라벨링제도와 같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단계보다 사용단계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관련 규제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⁸⁷⁾

6.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리스크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사업리스크라 함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리스크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규제리스크는 규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위험으로 국제협약 및 국내규제가 채택 또는 도입되기 전에 국가 간 의견조율, 공청회 등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CSA 환경공시지침은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부문에서 발행인에게 위협이나 새롭고 중요한 기회를 창출해낸 환경적 문제와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85) 장현숙·윤덕찬, 해외바이어의 탄소정보요구 추세 및 대응방안, Trade Focus vol. 9 no.60, 국제무역연구원, (2010. 11), 4쪽.

86) <https://www.cdproject.net/en-US/WhatWeDo/Pages/Case-Study-Dell.aspx>

87) 장현숙·조성대·김우중,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 9 no.19, 국제무역연구원 (2010. 4) 참조.

제 3 장 기후변화 공시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

제 1 절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다양한 리스크로 작용하며, 이는 곧 기업을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의 문제로 직결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잘 수행하고,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후변화가 실제로 진행되어 전 세계적인 규제정책이 실시된다면 기업은 적시에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기후변화 규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저탄소 상품과 기술서비스의 시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평판 또한 하락하여,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관리 능력이 바로 기업의 성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본조달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DP나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등과 같은 투자자 집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기업의 미래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본적, 윤리적 그리고 회사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는 기업에 리스크가 되기도 하면서 반대로 이를 잘 관리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현재 비재무적 요소가 바로 돈과 직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ESG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변수들이 점차 기업의 주요 경영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CEO Jeffrey Immelt가 Ecomagination 발표회에서 “환경이 돈이다(green is green)”⁸⁸⁾라고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⁸⁹⁾

CERES는 2007년 3월에 S&P 500 기업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개기업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⁹⁰⁾ 동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정이나 운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잘 알려진 추세, 책임, 불확실성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⁹¹⁾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가 회사의 제정 및 운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⁹²⁾

그리고 동년 9월에 기관투자자 그룹과 변호사, 환경단체, 미국 정부 관리와 비영리 그룹들은 SEC에 대하여 Regulation S-K의 101조, 103조, 그리고 303조를 포함한 현행 강제공시 규정들과 규칙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해석지침을 내려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⁹³⁾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경우에도 주주제안을 통해 기후변화 공시

88) ‘green’ 이라는 단어는 달려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는 점 때문에 돈이나 지폐라는 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89) “Heroes of the Environment”(2007년 10월 17일자 TIME지 기사 참조).

90)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ii.

91) *Id.* at 27.

92) Kimberly O'Neill Packard & Forest L Reinhardt, What Every Executive Needs to Know About Global Warming, *Harv. Bus. R.* (July-Aug. 2000), at 129, 134, reprinted in *Harvard Bus. Sch. Press, Harvard Business Review on Green Business Strategy* (2007).

93) Petition for Interpretive Guidance on Climate Risk Disclosure, at 2-3.

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위임장 권유신고서(annual proxy statements)에 포함시킬 만한 내용을 자주 내놓고 있다.⁹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한 기관은 2010년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16개 국가의 항공사, 은행, 화학약품공장 등 세계적인 주요 기업(연매출액 10 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의 임원 중 약 50%가 에너지효율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에 수익의 0.5% 이상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요분석을 통해 기후대응행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90%에 달했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펜하겐회의에서의 기후협상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후변화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신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임원은 65%에 달했으며, 63%는 환경성과 보고 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항목에 대한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하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경영진이 환경 관련 규제와 세계적 기준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관심 증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⁹⁵⁾

한편 위 설문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2008년과 2009년에 기후변화와 보험 산업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도 있는데, 2008

94) McFarland, supra note 69, at FN20 참조.

95) Ernst & Young, Action amid Uncertainty-The business response to climate change- (2010. 6),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

년 보고서는 보험 산업이 직면한 10대 전략적 기업리스크를 검토하여 기후변화가 보험 산업에 최대위험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09년 보고서에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장기적인 성장, 수익 및 효율성 제고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⁹⁶⁾ 또한 2011년에는 기후변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지속가능성’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배경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⁹⁷⁾

한편 UN Global Compact와 경영컨설팅기업인 Accenture가 2010년 6월에 발표한 “A New Era of Sustainability”를 통해 CEO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인식도 조사에서 72%의 CEO는 기업경영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는 “교육”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후변화”라고 응답한 CEO는 66%였다고 한다.⁹⁸⁾ 또한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 세계 경영자의 90%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원이 2008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53.13점으로 기준 점수인 6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또한 동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불과 41%가 인식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6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¹⁰⁰⁾

96) Ernst & Young, Strategic Business Risk 2008; The top 10 business risks for insurance 2009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

97) Ernst & Young,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2011. 8)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

98) <http://blog.daum.net/loveacrc/2902>(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참조.

99) 지속가능원 보도자료 (2008. 2.18) 참조.

100) 박태주,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2009년 제 2회

이처럼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매우 큰 이유는 그 리스크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조직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위험, 즉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에의 약관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보험료 산정도 어려운 문제인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 중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리스크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 같지만, 그 발생 가능성이 현재적이지 않고, 그 체감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이나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매스컴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우리나라의 상장법인의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환경정보의 공시실태와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공시의 수준과 경제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가 사실상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들고 있다.¹⁰¹⁾ 이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같은 환경관련 공시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5쪽 참조.

101) 최종서,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자발적 환경공시의 내용분석: 환경성과 및 경제적 성과와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107쪽.

제 2 절 CERES Report¹⁰²⁾

2007년 9월 기관투자자 및 정부관리 등이 SEC에 대한 기후리스크 청원에서 현행 법률상 공시항목과 기후리스크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CERES Report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¹⁰³⁾ SEC가 지침을 발표할 경우 그 내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¹⁰⁴⁾ 물론 CERES Report는 기업의 자율공시에 관한 것이므로 증권관계법상 강제공시의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GRI, 탄소공시 프로젝트, 그리고 온실가스 Release Inventory 등 복잡하고 방대한 보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¹⁰⁵⁾

그러므로 SEC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법률상 강제공시사항으로 한다면, 이하에서 설명하는 CERES Report의 4가지 범주(Category)를 증권관계법 및 공시지침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CERES Report의 4가지 범주

(1) 기후 리스크와 배출 관리에 대한 전략적 분석

CERES Report는 기업들에게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① 기후변화 정책에

102) 이 부분은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주27)를 대폭 수정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103)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 3.1.a, 3.2.a, 3.3.a, 3.4.a.

104)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1.

105) Susanna Kim Ripken, The Dangers and Drawbacks of the Disclosure Antidote: Toward A More Substantive Approach to Securities Regulation, 58 Baylor L. Rev. 139, 146-147 (2006).

대한 설명, ② 리스크 감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설명, ③ 기후 변화리스크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술 등 3가지이다.¹⁰⁶⁾ 즉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분석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¹⁰⁷⁾

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설명

CERES는 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입장 및 책임의식, 정부와 환경단체와의 약속 등 기업의 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⁰⁸⁾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CERES의 권고는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 기준에 의한 제한대상은 아니다.¹⁰⁹⁾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놓고 있는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후변화 정책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기후변화리스크를 처리함에 있어 얼마나 성실한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⁰⁾

106)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15-16.

107) Id. at 15.

108) Id.

109)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3.

110) Id.

나) 기후변화리스크 감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

CERES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기후변화가 기업에게 어떠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활동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¹⁾ 구체적으로는 감축 대상, 신기술 개발 및 장래 계획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¹¹²⁾

동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정책과 달리 기후변화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회사의 행위는 중요성 기준이 적용된다.¹¹³⁾ 따라서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노력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은 없다”라는 문언을 정기보고서에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¹¹⁴⁾

다) 기업지배구조와 기후변화

CERES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회사의 부수업무가 아닌 주요업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CERES Report는 기업내부에서 기후변화리스크를 감독하는 임원의 성명과 이사회가 임원의 업무에 관여하는지의 여부,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가 기후변화리스크 관련회의와 연동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지배구조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⁵⁾ 모든 회사는 정기보고서에

111)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15.

112) Id. at 15-16.

113) The CERES Report는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소개하는 것은 문체가 있다(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 3.1.a 참조).

114)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4.

115)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16.

이사회와 경영진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기후변화 정책과 행위,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다루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들의 직책명 등을 업데이트한 빈도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충분할 것이다.¹¹⁶⁾ 투자자들은 그 회사가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항목 또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중요성 기준은 요하지 않는다.¹¹⁷⁾

기후변화리스크와 관련된 지배구조의 공시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직책으로 확인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¹⁸⁾ 이 견해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경영진 중 몇 명이 관여했다는 사실만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¹¹⁹⁾

또한 CERES Report는 “회사들은 임원의 보수가 회사의 기후 목적 회의와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공시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¹²⁰⁾ 위에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이미 정기서류 제출 시 성명을 적시하지 않은 임원의 성명을 밝히는 경우 사생활보호와 책임 문제가 생길 것이며, 그들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밝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6)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4-315.

117) *Id.* at 315.

118) *Id.*

119) *Id.*

120) *Id.* at 316.

(2) GGH 배출량 및 감축계획 공시

CERES는 GGH 배출과 관련하여 회사들에 대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래 기후변화 규제로 인해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¹²¹⁾ 특히 CERES는 1990년 이후 과거의 배출 데이터, 현재의 배출 데이터, 그리고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여 산출한 장래의 배출량 등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온실가스 프로토콜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of the Greenhouse Gas Protocol)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¹²²⁾

(3) 물리적 리스크

CERES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및 기관조직 등에 미치는 중대한 물리적 영향들을 분석하고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기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수 이용가능 여부, 지구 온난화, 기업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ERES는 또한 기업들에게 그러한 비용견적을 포함하여 물리적 위험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ERES의 권고사항은 기후리스크청원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기후리스크청원에서 간주하는 물리적 위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비슷하며, 중요성 기준과도 적절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권고사항은 Regulation S-K의 101조 및 503조(c)에 따른 회사가 부담해야 할 현재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 위험이란

121)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20.

122) Id.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에 대한 공시는 반드시 포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강제 공시는 증권관계법상의 중요성 기준을 포함하여 CERES 권고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기업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요구받은 사항들을 다시 요구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후변화에서 야기되는 물리적 위험에 대한 특정 설명은 기업에 대한 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CERES에 따르면, 실제로 물리적 위험에 관하여 투자자들이 회사로부터 원하는 정보의 1/3만 공시되고 있다고 한다.¹²³⁾

(4) 규제 리스크

CERES는 회사에 대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부과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 바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CERES는 201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규제 시나리오 계획안과 양적인 측면이 포함된 회사와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⁴⁾

CERES의 권고사항의 상당 부분은 Regulation S-K 항목 303조에 의거하여 포함되는 경영진의 의견에 표명된 장래의 경제적 실적 및 재무상황과 영업결과의 분석에 관한 설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¹²⁵⁾ 미국 정부가 회사의 운영과 재무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사항은 정기 보고서 부분에 들어 있는 일상적인 주제이다. 그렇지만 CERES의 권고사항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것들도 있다.¹²⁶⁾

123) CERES Report, *supra* note 65, at 23.

124) *Id.*

125) Regulation S-K, 17 C.F.R. § 229.303(a) (2007).

126)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9.

2. CERES Report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ERES report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4가지 범주의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제정이나 지침을 통한 강제공시의 요건으로서 CERES의 권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너무 장기간의 데이터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5년간의 데이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셋째, CERES가 예견된 장래의 배출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들에게 정기보고서에 예측과 예상(forecast and projection)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SEC규정과 배치된다. 예측 정보는 그러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틀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예측정보가 처음 등장할 때인 1970년도 초반에 미국의 SEC는 회사가 SEC에 제출하는 예측정보의 공시를 거부하면서 반드시 확정된 사실만의 공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Basic v. Levinson* 판결에서 예측정보의 경우 아직 믿을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거나 투기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측정보(soft information)에 대한 공시를 강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 믿을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또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가져올 책임문제와 그러한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¹²⁷⁾

127) 같은 생각: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380-381쪽.

그러나 1979년에 SEC가 오해를 유발할 염려가 없는 예측정보에 한하여 공시를 허용하면서, 예측공시가 ‘합리적인 근거’, ‘선의’, 그리고 ‘주의문구’가 표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SEC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주에게 제출되는 연차보고서의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1995년에는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의 일환으로서 1933년 증권법(제27A조)과 1934년 증권거래법(제21E조)을 개정하여 예측정보를 기초로 한 민사책임으로부터 일정한 발행인과 기타의 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측공시에 대한 법적인 면책 조항인 3개의 안전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항 규정(safe harbor rule)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¹²⁸⁾ 결국, CERES가 권고하고 있는 장래의 배출계획은 강제공시사항보다는 회사의 자율적인 공시사항의 영역에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¹²⁹⁾

예를 들어, 모든 관련 국가의 온실가스 규제 리스트에 대한 CERES 권고사항은 자율적 공시사항으로는 충분하지만 강제적 공시 사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리스트는 중요성 기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회사들이 2015년까지 정해진 퍼센트까지 배출비용의 감축을 공시하라는 CERES의 권고는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할지는 몰라도 강제적 공시사항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SEC가 회사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¹³⁰⁾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강제공시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제 공시규정들이 갖고 있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CERES가 권고하는 “시나리오 계획안”도 마찬가지이다.

128) § 229.303(c); Securities Act of 1933, 15 U.S.C. § 77z-2 (2007).

129) McFarland, *supra* note 69, at 317.

130) Regulation S-K, 17 C.F.R. § 229.10(b).

강제공시의 영역에 들 수 있는 것으로는 경영진의 기후 변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영진의 토론과 분석에 해당한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생생한 배출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영진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투자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배출 데이터를 구체화하여 그 리스크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히는 독자중심의 접근방법(reader-friendly approach)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제 3 절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체계¹³¹⁾

1.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

CERES Report 및 투자자그룹 등의 기후리스크청원 등 사회적 요구와 여러 주정부 등이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¹³²⁾ 등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SEC는 2010년 1월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이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SEC는 이 지침은 기후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공시요건에 관한 SEC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 지침이 연방증권법률 및 규제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³⁾ 또한 SEC가 앞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

131) 이 부분은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주27)를 대폭 수정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132)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the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을 제정하고, 규제조치를 취하였으며, 미 의회는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하원),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of 2009(상원)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로운 지침을 발표하거나, 규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이 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공시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¹³⁴⁾ 따라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현행 공시체계에 따라 공시하면 되고, 다만 SEC는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1) 법령과 규제의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경영진은 해당 법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¹³⁵⁾ 이때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공시하여야 하는데,¹³⁶⁾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SEC는 기후변화 관련 법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예로서 ① 배출권거래시스템(“gap and trade” system)하에서 할당분과 공제분의 구입비용 또는 판매를 통한 수익, ② 규제를 준수하거나, 배출권거래시스템의 재정적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설비 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 ③ 법제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상품의 판매비용의 변화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수익 및 손실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¹³⁷⁾

133) SEC Release Nos. 33-9106,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at 3.

134) Id. at 27-28.

135) Id. at 23.

136) Id.

137) Id. at 24.

(2) 국제협약이 미치는 영향

SEC는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EU ETS의 실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의 관련 법제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¹³⁸⁾ 따라서 경영진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규제나 업계동향의 간접적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법적,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발전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또는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¹³⁹⁾ 즉, 기후변화는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상품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기후변화가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¹⁴⁰⁾ SEC는 해석지침에서 ①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② 온실가스를 경쟁상품보다 적게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③ 혁신적인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의 증가, ④ 대체에너지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 등에 대한 수요 증가, ⑤ 시추업 또는 장비유지보수업 등과 같은 탄소기반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4)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

홍수 또는 허리케인과 같은 악천후, 해수면의 변화, 농경지의 변화, 물 부족 또는 수질악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물리적 변

138) Id.

139) Id. at 25.

140) Id.

화는 기업의 경영 및 성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⁴¹⁾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 바 있는 2011년 발생한 태국의 홍수로 인한 피해이다. GAO는 2007년 보고서를 통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보험사가 지급한 재산손실보상액의 88%가 날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증가가 악천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¹⁴²⁾ SEC는 이러한 GAO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게는 악천후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악천후에 취약한 기업은 물리적 위험 및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³⁾

그리고 SEC는 물리적 위험의 예로 ① 제품의 생산 또는 운송을 포함한 사업이 해안선에 집중된 기업의 재산적 피해와 사업차질, ② 홍수 또는 허리케인 등과 같은 악천후로 주요고객 또는 협력업체가 피해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재정적 사업적 영향, ③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 및 채무의 증가, ④ 가뭄 등 날씨변화 지역의 농업생산력 감소, ⑤ 보험료 및 부담금의 증가 또는 악천후를 대비한 기업의 보험 보장범위의 감소 등을 들고 있다.¹⁴⁴⁾

2. 공개기업 보고서에 요구되는 공시

미국의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34년법’이라 함) 제13조(a)에 따르면, 모든 증권 발행인들은 SEC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SEC는 보고서 내용과 양식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¹⁴⁵⁾ 따라서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발행인은 제13조(a)와 관련 규

141) Id. at 26.

142) Climate Change: Financial Risks to Federal and Private Insurers in Coming Decades Are Potentially Significan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GAO-07-285 (March 2007).

143) SEC Release Nos. 33-9106, supra note 133, at 26-27

144) Id. at 27.

정들에 의거하여 등록용인 10양식(Form 10)에 상당하는 10-K양식¹⁴⁶⁾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¹⁴⁷⁾ 4분기 중 앞의 3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내에 10-Q양식¹⁴⁸⁾에 의한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를¹⁴⁹⁾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10-K양식과 10-Q양식 모두에 회사의 재무 상황과 영업실적,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소송 절차 그리고 위험과 경영진단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비재무적인 사항에 관한 표준공시항목의 기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S-K의 항목 101,¹⁵⁰⁾ 103,¹⁵¹⁾ 303,¹⁵²⁾ 503(c),¹⁵³⁾ 그리고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에는 Regulation S-K의 4가지 항목이 기후변화 공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145) 15 U.S.C. § 78m (2007).

146) 17 C.F.R. § 249.310 (2007).

147) 17 C.F.R. § 240.13a-1 (2007).

148) 17 C.F.R. § 249.308a (2007).

149) 17 C.F.R. § 240.13a-13 (2007).

150) Regulation S-K의 조항 101조는 환경보호법을 준수함에 따라 등록기업 및 그 자회사가 입을 수 있는 자본지출, 이익 및 경제적 위치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1) Regulation S-K의 조항 103조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 절차에 관하여 약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계류 중인 소송 절차의 가능한 결과 및 그 중요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적인 손실(loss contingency)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152) Regulation S-K의 조항 303조는 경영진에 대하여 등록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특히 유동성, 자본자원(capital resources) 및 소득에 관한 추세나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확정자료 뿐만 아니라 장래예측정보(soft information)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 Regulation S-K의 조항 503조(c)는 기업투자의 리스크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위험 및 특정 위험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1) 사업설명(Regulation S-K의 항목 101)

Regulation S-K는 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비재무적인 사항에 관한 표준공시항목의 기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Regulation S-K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무적 공시 항목인 항목 101은 등록 기업에 대하여 ① 동 기업 및 그 자회사 및 과거 5년(회사 설립 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3년) 이내의 전임기업에 관한 경영 활동 등 회사의 일반적 연혁(*general development*), ② 최근 3개 회계연도 각 년에 있어서의 각 산업부문별 재무정보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면서,¹⁵⁴⁾ 동시에 제품 및 서비스, 영업 관행, 경쟁적인 영업 조건 등을 포함한 영업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¹⁵⁵⁾ 또한 환경보호법을 준수함에 따라 등록기업 및 그 자회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본지출, 수익, 경쟁력 등에 대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경영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래의 우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회사는 Regulation S-K의 항목 101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국제적 조약의 체결 또는 국제 입법의 전개 과정 및 다양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목 101이 영업에 관하여 제품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같이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폭넓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공시는 정기보고서의 기타 부문에 기술될 수 있지만 사업설명을 함께 있어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내용을 기술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하여 개발

154) Regulation S-K, 17 C.F.R. § 229.101 (2008).

155) Regulation S-K § 229.101(c).

중인 신제품이나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분기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¹⁵⁶⁾

(2) 소송 절차(Regulation S-K의 항목 103)

Regulation S-K의 항목 103은 중대한 소송 및 행정쟁송에 관한 항목으로서 계류 중인 중대한 소송 절차에 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⁷⁾ 따라서 회사는 기후변화 소송에 관한 판결례나 심결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3자가 소송제기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청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항을 공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¹⁵⁸⁾ 결국 여기에서도 중요성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행인은 기업과 자회사 연결자산(consolidated assets)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데,¹⁵⁹⁾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사들은 10%라고 하는 선을 넘으면 항목 103에 의해서 소송절차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회사들이 민사책임을 묻거나 엄격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환경규제 정책에 저촉되면 항목 103에 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고 한다.¹⁶⁰⁾

156) General Instruction C in Form 10-Q. 17 C.F.R. § 249.308a (2007).

157) Regulation S-K § 229.103.

158) ABA, 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Lawyers Response to Auditors Requests For Information, 31 Bus. Law. at 1709, 1710 (1976).

159) Regulation S-K § 229.103.

160) McFarland, supra note 69, at 288.

(3) 경영진단 및 분석(Regulation S-K의 항목 303)

Regulation S-K의 항목 303에 따르면 경영진은 등록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특히 유동성, 자본자원(capital resources) 및 소득에 관한 추세나 불확실성 등을 검토하여 경영진 스스로가 내린 분석(MD&A)을 공시하여야 한다.¹⁶¹⁾ 항목 303은 hard information이 아닌 soft information, 즉 과거의 확정자료만이 아니라 장래의 예측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SEC의 회계접근방식에 대응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항목 303은 발행인에게 기업의 유동성, 현금의 흐름, 순매출 및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동향이나 불확실한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303조 내에 특별히 항목으로 정하지 않은 정보라¹⁶²⁾ 하더라도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의 변화 등과 같이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항목 303은 매우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포괄적인 공시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목은 특히 경영이 어려운 회사(troubled company)에게 중요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경영진들은 불확실한 사유가 현실화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러한 사유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합리적 판단이 비교적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근거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진이 기후변화가 특히 회사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항목 303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161) Regulation S-K § 229.303(a).

162) Id.

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정상의 영향을 아직 평가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리스크에 대한 경영진단 및 분석에 대해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⁶³⁾

(4) 위험요인(Regulation S-K의 항목 503)

Regulation S-K의 503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투자판단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⁶⁴⁾ 그러한 위험요인들은 그 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될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사업설명서에도 들어 있고, 10-K 양식상에 정기적인 보고 형태로도 들어 있다.¹⁶⁵⁾ 또한 10-Q 양식은 최종 정기보고서에 보고되었던 위험요인들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분기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초래될 회사 자산에 대한 물리적 위험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공시하는데 항목 503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항목 503(c)에 따르면, 위험요인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을 간결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명확히 언급하고, 특정 위험이 특정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¹⁶⁶⁾ 그런데 항목 503(c)는 일반적인 리스크의 목록만 제공하고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¹⁶⁷⁾ 그러므로 기업 투자의 기후변화 리스크 등 리스크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공시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163) McFarland, supra note 69, at 288.

164) Regulation S-K § 229.503(c).

165) Id.; Form 10-K, at Item 1A.

166) Regulation S-K § 229.503(c): 이 부분은 SEC의 'Plain English' rule의 적용을 받는다.

167) Regulation S-K § 229.503(c).

(5)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10-K 양식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이전 년도에 대한 비교 정보와 함께 가장 최근에 완성된 회사의 회계감사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¹⁶⁸⁾ 회계감사 부문에는 주식에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인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부문이 들어 있어야 한다.¹⁶⁹⁾ 손실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기된 소송(asserted claim)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¹⁷⁰⁾

FASB규정에 따르면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a loss is “probable” if it is “likely to occur”).¹⁷¹⁾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라 함은 손실 발생의 기회가 아주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것을 의미한다.¹⁷²⁾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만 있으면 공시를 하여야 한다.¹⁷³⁾

이제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타 환경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소송, 특히 그것들이 정부가 만든 법률 및 규정과 관련이 있는 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 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FASB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와 같은 우발채무들은 공시되어야 한다.

168) Form 10-K, at Item 8.

16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Mar. 1975) (이하 ‘FASB No. 5’): http://www.fasb.org/pdf/aop_FAS5.pdf.

170) Id. at FAS5-4.

171) FASB No. 5, supra note 169, at FAS5-2.

172) Id.

173) Id. at FAS5-4.

3. 중요성

SEC 규정들과 규칙들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은 분기보고서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¹⁷⁴⁾ 그리고 미연방대법원은 중요성의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¹⁷⁵⁾ 그런데 장래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은 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¹⁷⁶⁾ 그러므로 공개기업들은 기후변화가 그들의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중요성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행인들의 반응을 볼 때,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자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⁷⁷⁾

SEC는 중요성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¹⁷⁸⁾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오로지 경제적인 영향으로만 평가할 경우 중요성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고 본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중요성을 결정할 때 사회적 책임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고, 지구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연인이 부담해야 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¹⁷⁹⁾

174) 17 C.F.R. § 240.10b-5 (2007).

175) *Basic v. Levinson*, 485 U.S. 224, 237-40 (1988).

176) *Id.* at 238.

177) *McFarland*, *supra* note 69, at 291.

178) Cynthia A. William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Corporate Social Transparency*, 112 *Harv. L. Rev.* 1197, 1251 (1999).

179) *McFarland*, *supra* note 69, at 292.

4. 평이한 언어에 의한 공시

미국의 경우,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서면인 사업설명서는 SEC의 이른바 “평이한 영어(plain english)”규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¹⁸⁰⁾ 이 규정은 사업설명서, 특히 사업설명서의 리스크 요인 부분에 들어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정에는 (1) 보다 간결한 문장, (2) 일상적인 언어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호성 제거, (3) 수동태 문장 제거, (4) 특히 자료가 복잡할 때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 (5) 법률 또는 경영상의 전문용어 및 기술적 용어의 회피, (6) 다중 부정 회피¹⁸¹⁾ 등 여섯 가지 원칙이 들어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공시하거나 증권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대부분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데, 법률적인 전문용어, 수동태 문장, 그리고 모호한 문장 등이 들어 있다 보니 일반 투자대중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⁸²⁾ 따라서 SEC의 평이한 영어 규정은 일반 투자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업들이 투자 대중들과 보다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³⁾

기업들이 법률문장을 작성함에 있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내용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전문화된 용어 및 과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적 문장과 같은 특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GHG 배출 데이터와 같이 기후변화 리스크는 매우 복잡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영진의 논의와 분석이 따르는데 일반 투자대중이 이처럼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더 평이한

180) 17 C.F.R. § 230.421(d).

181) Regulation S-K, 17 C.F.R. § 230.421(d)(2) (2007).

182) Bryan A. Garner, *Legal Writing in Plain English* 24-25, 34, 37 (2001).

183) Ripken, *supra* note 105, at 146.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주식브로커나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¹⁸⁴⁾ 평이한 영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제 4 절 CSA의 환경공시지침

1. 배 경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캐나다증권관리위원회(CSA)는 2010년 10월 27일에 북아메리카 3위, 그리고 세계 8위의 토론토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새로운 환경공시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공시요건은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 벤처거래소, 그리고 캐나다 국립증권거래소와 같은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사를 포함한 모든 캐나다와 외국 공시기업들에게 적용된다.

동 지침의 목적은 공시기업들과 기타 투자펀드들에게 증권관계 법률(securities legislation)에 따라 환경문제들에 관한 현행 계속공시요건에 관한 공시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의도가 ① 환경문제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 ② 환경문제에 관한 그들의 공시내용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새로운 법률적인 요구를 하거나 기존의 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동 지침은 현행 환경공시관행을 조사한 OSC Staff Notice 51-716 Environmental Reporting(OSC 조사)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OSC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 상담과정에서 투자자나 주주들이 환경문

184) Paula J. Dalley, The Use and Misuse of Disclosure as a Regulatory System, 34 Fla. St. U. L. Rev. 1089, 1105-1106 (2007).

제에 관한 공시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히 환경문제에 관한 중요정보가 자율공시 내용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데 증권규제서류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제공된 정보가 반드시 완결된 것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거나 발행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상투적인 내용이 태반이고, 그 정보가 증권규제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율공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증권관계 법률에 의하여 계속공시서류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반드시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그 정보가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공시지침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¹⁸⁵⁾

동 지침은 ① 환경위험과 관련 문제들, ② 환경위험에 대한 전망과 관리, ③ 환경 목적과 그 대상에 관한 예측정보요건, ④ 환경책임을 공시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이 미치는 영향 등의 영역에 관한 공시규정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¹⁸⁶⁾ 환경공시는 계속공시 부문이며,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은 회사의 CEO, CFO, 회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이사회이다. 그리고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공시지침은 투자자들이 점차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주제안(shareholder resolutions)과 같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동 지침은 투자자들의 공시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SEC 또한 미국의 공개기업들에 대하여 유사한 공시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185) 이상 Steve Saville, CSA Issues Guidance on Environmental Disclosure Securities and Mergers & Acquisitions Bulletin(<http://www.fasken.com/en/csa-issues-guidance-on-environmental-disclosure/>, 최종방문 2013. 5. 22) at 1 참조.

186) CSA Staff Notice 51-333.

2. 중요성 기준

정보의 공시여부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인은 중요성이다. 그러므로 발행인이 증권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술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자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SA는 중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반드시 공시해야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발행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 지침에서 발행인들이 고려해야 할 처리원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성적 기준(non-exhaustive list)을 공표하였다.

① 불명확기준테스트(No bright-line test)

중요성의 정도를 정하는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중요성은 발행인의 규모와 산업형태와 같은 요인들에 기초한 근거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발행인들은 중요성을 결정할 때 양적 요인뿐만 아니라 질적 요인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황(context)

중요성은 그 항목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실이 자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발행인들은 유용한 정보의 견지에서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타이밍(Timing)

정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문제를 조기에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

④ 추세(Trends)

추세를 평가할 때, 발행인들은 환경적 추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가능성과 그 예상되는 효과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조심(Err on side of materiality)

만일 어떤 정보의 중요성에 관해 의심이 생기는 경우, 발행인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해야 하고 그 정보는 공시되어야 한다.

3. 환경 위험과 관련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National Instrument 51-102(NI 51-102) 계속 공시의무에서는 5가지의 중요한 공시요건들을 정해놓고 있다.

① 환경위험

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관련 환경위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행인의 사업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들은 다섯 가지 범주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소송, 물리적, 규제, 평판, 그리고 사업모델로부터 나온다. 중요한 위험들은 상투적인 문장을 지양하고 유의미한 방법으로 공시되어야 한다.¹⁸⁷⁾

② 추세와 불확실성

발행인은 환경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추세와 불확실성이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와 장래의 예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¹⁸⁸⁾

187) Item 5.2 of Form 51-102F2.

188) Item 1.4(g) of Form 51-102F1.

③ 환경책임

CSA는 비록 그 책임이 재무제표에서 언급되었거나 기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잠재적 환경책임들이 발행인의 계속공시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므로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환경책임들뿐만 아니라 반영되지 않은 환경책임들도 포함된다.¹⁸⁹⁾

④ 복구충당부채(Asset retirement obligations, ARO)

CSA는 만일 ARO가 발행인에게 중요하다면 그 발행인은 재무제표와 MD&A 모두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본다.¹⁹⁰⁾

⑤ 환경보호요건의 재무적 효과와 운영효과

환경보호요건의 재무적 효과와 운영효과를 논할 때, 발행인은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¹⁹¹⁾

4. 리스크 감독과 관리

현재의 계속 공시요건들은 이사들이 환경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① 발행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환경정책

발행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발행인은 이러한 정책들과 그 이행단계를 기술하여야 한다.¹⁹²⁾

189) Part 1(a) and Item 1.12 of Form 51-102F1.

190) Items 1.2 and 1.6 of Form 51-102F1.

191) Item 5.1(1)(k) of Form 51-102F2.

192) Item 5.1(4) of Form 51-102.

② 지배구조(Board governance)¹⁹³⁾

발행인은 관련 위원회(board)가 어떻게 환경위험을 관리하는지 공시하여야 하며, 특정 위원회(board) 또는 그러한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수준위원회(management-level committee)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국제회계기준(IFRS)

대부분의 발행인들은 2011년 1월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발행인들에 대한 재무보고와 환경책임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발행인들은 GAAP 하에서의 경우보다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더 많은 환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6. 예측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 FLI)의 요구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환경목적(environmental goals)과 세부목표를 공시할 때 발행인들은 해당되는 예측재무정보(future oriented financial information)와 예측정보(FLI)에 관한 규제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7. 환경공시 관련 지배구조

계속공시서류 상의 발행인의 환경공시는 회계위원회의 검토(NI 52-110), 이사회의 승인(NI 51-102), 그리고 CEO와 CFO의 확인 등 차례로 3단계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감독의 일환으로 위원회, 이사회, 그리

193) Section 3.4 of National Policy 58-201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고 심사관(certifying officer)들은 어떠한 환경문제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발행인의 사업과 운영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발행인의 현재 그리고 장래의 환경위험과 책임의 크기와 원인, 그리고 성질은 무엇인지, 경영진은 환경문제들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중요성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렸으며,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는 재무제표, 경영진단의견서(MD&A), 그리고 연도별 정보 양식(Annual Information Form, AIF)에 들어 있는 공시내용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재무 및 자율 공시의 통합

발행인은 자율공시에서와 같이 그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웹사이트 상에서, 그리고 조사에 응하여 계속공시서류에 들어 있는 내용 이외의 것들도 공시할 수 있다. 물론 자율공시체제에서 공시할 수 있는 정보 정보가 증권관계 법률에 의하여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계속공시서류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행인들은 그들의 웹사이트, 자율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 어떠한 허위사실도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과 기타 서면형식의 표현(written communications)들은 증권규제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유통시장공시에 대한 민사책임과 예측정보(FLI)에 관한 증권관계 법률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행인들은 이러한 서류와 웹사이트 상의 공시내용이 그들의 계속공시서류 상의 공시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¹⁹⁴⁾

194) 이상 Steve Saville, *supra* note 185, at 2-3 참조.

제 5 절 기후변화보고체계(CCRF)

1. 배경 및 주요 내용

기후정보표준화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이하 ‘CDSB’라 함)는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로서 기업들이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와 같은 주류보고서(mainstream reports)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후정보공개 표준을 만드는 컨소시엄이다. 현재 CERES, WEF, WRI를 포함하는 7개 기관이 이사회로 있으며, Alcan, AIG, Royal Dutch Shell, JP Morgan Chase, Swiss Re, IIGCC, UNEP FI와 같은 여러 방면의 기관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 사무국은 CDP가 맡고 있다.

가치창출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온실가스 배출과 그 완화 및 경감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재무공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무형의 요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들은 위험과 기회에 대한 그들의 회사경영의 전체론적인 견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정보를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CDSB는 주류재무보고서(mainstream financial report)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자발적인 보고 체제로 기후변화보고체계(Climate Change Report Framework, 이하 ‘CCRF’라 함)를 만들고, 이는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에 관한 규정들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CCRF는 기후변화가 어떤 회사의 재무 성과와 회사가 위험과 기회를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⁹⁵⁾

195) <http://www.cdsb.net/climate-change-reporting-framework> (최종방문 2013. 5.24).

그런데 CDSB는 2012년 10월에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표준화의 촉진,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 및 재무와 비재무 업무보고의 연결 등을 목적으로¹⁹⁶⁾ 하여 기존의 CCRF 1.0을 보완한 CCRF 1.1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그리고 CCRF는 제1장 서론(Introduction), 제2장 요건(Requirements), 제3장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특징(Characteristics of decision-useful information), 제4장 공시내용에 대한 요건(Requirements for disclosure content)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서론

CDSB는 CCRF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의도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우선 기업은 투자자에게 가치 있는 공시내용의 범위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기업의 전략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 절차에 따라 CCRF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공시를 결정하여야 하고,¹⁹⁷⁾ 공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¹⁹⁸⁾ 공시내용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등¹⁹⁹⁾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1) 공시결정

정보의 종류는 CCRF 제4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²⁰⁰⁾ 제공된 정보의 주된 이용자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²⁰¹⁾ 공시되는 정보는 기업의 전략과

196) CCRF 1.1 at 1.

197) CCRF Introduction §2,1(Determination).

198) Id, (Preparation).

199) Id. (Presentation).

200) CCRF §2,5.

목표에 대한 경영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²⁰²⁾ 일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리스크 또는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및 재무성과 등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기후변화관련 정보의 공시는 관련 규제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련 규제와 CCRF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규제의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CCRF과 충돌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²⁰³⁾

(2) 공시서류 작성 기준

CDSB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관련 공시를 함에 있어 공개내용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과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⁰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관련 정보의 기준년도를 회계기준년도와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²⁰⁵⁾ 투자자들은 기업의 과거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²⁰⁶⁾ 그리고 CDSB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제4장의 내용은 개별 법인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⁰⁷⁾ 또한 CDSB는 기업으로 하여금 CCRF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CCRF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²⁰⁸⁾ 적합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기후

201) CCRF §2,6.

202) CCRF §2,8.

203) CCRF §2,11.

204) CCRF §2,12.

205) CCRF §2,18.

206) CCRF §2,16.

207) CCRF §2,20.

208) CCRF §2,22.

변화관련 정보의 작성 및 검증에 사용된 기준, 정책, 기업집단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이 기간마다 작성되는 공시서류 간에 일관성 있게 작성 될 것을 요구한다.²⁰⁹⁾

(3) 공시서류의 작성 및 발표

CDSB는 기업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고, 공시서류 작성 후 이를 공시함에 있어 해당 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²¹⁰⁾ CDSB는 기업의 사업 분야, 특성 및 관련 규제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표현방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²¹¹⁾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CRF §2.31의 작성 권고안

권 고	금 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경영진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시기업의 과거 성과 및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분석	분석 없이 재무 정보를 되풀이 하는 표준적인 공식(standard formulation)
공시결정에 대한 CCRF 요건의 적용을 통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집중	공시기업의 특별한 관행 및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 정보공시
관련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정보공시	재무제표에서 공시되거나 설명된 항목에 관한 전략의 이해나 추가적인 분석 없이 재무제표 상에 들어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보 공시

209) CCRF §2.24.

210) CCRF §2.26.

211) CCRF §2.30.

CDSB는 정보를 배치함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기업의 전략 및 운영 간에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곳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²¹²⁾ 기업은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경영진이 이용하는 성과 측정 방법 및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²¹³⁾ 또한 기후변화관련 정보에 있어 연간 비교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은 최종 성과나 접근 방법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²¹⁴⁾ 마지막으로 공시내용은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가 세그먼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내용도 그 세그먼트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²¹⁵⁾

3. 공시대상정보의 특성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CCRF는 공시대상정보의 범위를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CCRF 제3장에서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의 특징은 CCRF의 요건과 일치하는 공시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²¹⁶⁾

212) CCRF §2.32.

213) CCRF §2.36.

214) CCRF §2.39.

215) CCRF §2.41.

216) CCRF §3.2.

(1) 관련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관련성이 있다.²¹⁷⁾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예측정보라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반드시 예측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 그 자체는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할 필요 없으며, 예측 가치를 가질 만큼 분명한 예견의 형태를 띠 필요도 없고, 투자자가 미래에 관한 예견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측 프로세스에 입력할 가치만 있으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²¹⁸⁾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 투자자그룹의 정보제공요청, 환경관련 규제에 급속한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후변화관련 정보간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충실한 표현

기후변화관련 정보는 질적(예를 들어, 가능한 결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체의 서술), 양적(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CDSB는 관련 정보의 서술이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어야 충실하게 표현되었다고 한다.²¹⁹⁾ 완전성은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서술된 내용이 이용자에게 허위정보이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을 누락시키지 않았고,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²⁰⁾

217) CCRF §3.7.

218) CCRF §3.8.

219) CCRF §3.13.

220) CCRF §3.14.

중립성이란 미리 결정된 결과를 달성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할 의도를 가진 선입견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중립적 정보는 정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향적이지 않고, 특정한 쪽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것이 전달하는 이미지에 색깔을 입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보의 발표나 선택에 의해서 그것들이 미리 결정된 결과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기후관련 공시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관련 정보공시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행해져야 한다거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²²¹⁾

CDSB는 기후변화관련 공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기후변화관련 공시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며,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상의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DSB는 기후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가정, 누락가능성에 대한 이용 가능한 최고의 정보를 반영한 타당하고 중립적인 정보입력에 대한 추정에 근거함으로써 그리고 누락의 본질과 정도, 가정, 그리고 불확실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²²⁾

(3) 중요성

CDSB는 중요성이 공시기업의 정보공개능력에 대한 제약이 아니고 오히려 중요성은 관련성에 대한 기업 특유의 측면이라고 하면서²²³⁾

221) CCRF §3.15.

222) CCRF §3.17.

223) CCRF §3.21.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지의 여부는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기업별로 정보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CCRF에서 중요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CDSB는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운영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주요 동향 및 중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필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²⁴⁾ CDSB는 중요성 기준의 목적 중 하나가 공시를 할 때 중요한 정보를 모호하게 만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 중복된 정보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CCRF상 요건과 모든 기후관련 모든 정보의 공시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²²⁵⁾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도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공시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관련 정보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결정은 공시서류 작성시점에서 지배적인 관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정도 또는 시기에 대한 기관투자자 간에 합치된 의사가 없기 때문에 CCRF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양적 테스트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²²⁶⁾ 다만 온실가스배출량의 절대치 또는 표준치와 같은 정보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²⁷⁾ 또한 각국의 입법자 또는 정책입안자가 비재무적 보고사항 또는 경영정책의 결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경우, 해당 지침이 중요성판단에 있어 CCRF보다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후변화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규제가 우선 적용

224) CCRF §3.24.

225) CCRF §3.25.

226) CCRF §3.26.

227) CCRF §3.27.

됨을 명시하고 있다.²²⁸⁾

이와 같이 CDSB는 중요성의 기준 및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CCRF상 요건에 기초한 정보의 평가 및 공개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경우에 기업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고 CCRF의 요건에 기초한 공시결정을 하여야 한다.²²⁹⁾

중요한 정보임을 보여주는 요인	중요하지 않은 정보임을 보여주는 요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 정보	
현재는 해당 기업이나 해당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특히 장래에 해당 기업의 업계에서의 위치에 변화를 줄 수 있거나, 신규투자 및 신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경영진이 이미 알려진 경향, 수요, 계약,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합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유동성, 재무상태의 변화 그리고 조업결과 등에 대하여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	재무상태 또는 조업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것

* 출처 : CCRF 1.1 at 18.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진은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공시하여야 하

228) CCRF §3.28.

229) CCRF §3.29.

며, 공시내용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모든 불확실성에 대하여 적절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²³⁰⁾

4. 공시내용

CDSB는 CDP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요청 내용, GRI의 G3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①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관련 리스크와 기회 등에 관한 기업의 전략, ②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데이터와 관련 규제를 공시내용으로 하도록 CCRF에서 밝히고 있다.

(1) 기업의 대응전략 등

CDSB는 기업에게 장·단기 사업전략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면서 CCRF에서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 위험(Risk), 기회(Opportunities), 관리행동(Management actions), 향후전망(Future outlook) 및 통제(governance) 등 6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²³¹⁾

첫째,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의 공시내용은 기후변화가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기업의 전략 목표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그것들에는 기후변화의 결과가 기업의 사업전략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거나 향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 경영진이 기업과 가장 관련이 있고,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기후변화관련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²³²⁾ 결정 요건을 적용한 방법에 대한 기술,²³³⁾ 경쟁력, 자료에 대한 접근성, 재무

230) CCRF §3.30.

231) CCRF §4.4.

232) CCRF §§2.3-2.11.

233) CCRF §4.6.

성과와 재무 상황에 대한 기후변화의 시사점 분석, 신기술, 브랜드 가치와 평판, 소비자 신뢰와 종업원의 충성도와 같은 자원과 기술혁신(resources and innovation)에 대한 기후변화의 전략적 시사점, 최종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의미 있는 위상변화와 그 변화이유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략적 분석 공시내용에는 자본과 운영비, 유동성, 계약(commitments), 책임이나, 총수입(revenues)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전략, 리스크, 그리고 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적 시사점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재정적 영향력과 추정 등을 수량화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적 정보와 함께 서술된 가정과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²³⁴⁾

둘째, 위험(Risks)에 관한 공시내용에는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장·단기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것에 대한 질적 평가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²³⁵⁾

셋째, 기회(Opportunities)에 대한 공시내용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그리고 예견되는 장·단기의 의미 있는 기회들에 대한 질적 평가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²³⁶⁾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는 기업에게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탄소배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내용은 기업의 사업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기후변화가 고객, 협력업체, 시장 등을 통하여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여야 한다.²³⁷⁾

234) CCRF §4.7.

235) CCRF §4.9.

236) CCRF §4.10.

237) CCRF §4.11.

넷째, 경영활동(Management actions)의 공시내용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그 영향 등을 다루기 위한 기업의 장·단기 전략 또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²³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세부적인 경영활동정보는 온실가스관련 규제, 기업의 감축 목표 및 계획 등이다.²³⁹⁾

다섯째, 미래 전망(Future outlook)에 대한 공시내용에는 그 전략의 성과가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소요기간이나 기업의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향과 요인들을 포함한 장·단기 향후 전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²⁴⁰⁾ 기후변화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전망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정과 어떤 불확실성이나 핵심 의존관계(key dependencies)에 기초해 있어야 하며, 기업의 장기적 목표 및 전략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²⁴¹⁾ 또한 향후전망은 기업의 성장방향이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비용 및 투자의 추정치를 포함하는 등 상세하게 공시되어야 한다.²⁴²⁾

마지막으로 통제에 관한 공시내용에는 기후변화관련 문제에 관한 확인, 관리 및 통제기구 감독에 할당된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과 통제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²⁴³⁾ 공시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자 및 기업의 대응전략 이행을 위한 체계, 기후변화관련 공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기초정보 및 관리시스템의 특성 등 세부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²⁴⁴⁾

238) CCRF §4.12.

239) CCRF §4.13.

240) CCRF §4.14.

241) CCRF §4.15.

242) CCRF §4.15.

243) CCRF §4.16.

244) CCRF §4.17.

(2) 온실가스배출 상황 등

CDSB는 기후변화의 요인 중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제한하기 위한 미래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위험을 분석하고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양질의 양적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²⁴⁵⁾ CCRF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 규정을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절대적이고 표준화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온실가스배출의 시간별 변화와 함께 그 이유, 변화를 불러온 활동에 대한 기술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⁶⁾

한편 CCRF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GHG Protocol”에 의존하고 있다.²⁴⁷⁾

CDSB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GHG Protocol에서 사용하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⁴⁸⁾ “범주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며, “범주 2”는 해당 기업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양, “범주 3”은 기타 간접배출량이다. CCRF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하는 기업은 3가지 범주 중 범주 1, 2의 공시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범주 3의 경우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²⁴⁹⁾ CCRF는 범주 1, 2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모자회사인 경우에는 통합해서 공시하고, 다른 기업과의 합작사업인 경우

245) CCRF §4.18.

246) CCRF §4.19.

247) CCRF §4.20.

248) CCRF §4.21.

249) CCRF §4.22.

지분율에 따른 비율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⁵⁰⁾ 사업장별, 활동별로 세부 배출량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²⁵¹⁾

제 6 절 EU의 기후변화 리스크공시

1.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EU의 대응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국가들(Annex B)은 2012년까지 각기 정해진 감축의무를 부담하는데, EU는 1990년 대비 8%의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²⁵²⁾ 교토의정서 상 EU의 15개 국가별 감축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EU 국가별 의무감축량>

국가명	의무감축량
Austria	-13%
Belgium	-7.5%
Denmark	-21%
Finland	0%
France	0%
Germany	-21%
Greece	+25%
Ireland	+13%
Italy	-6.5%
Luxembourg	-28%
Netherlands	-6%
Portugal	+27%
Spain	+15%

250) CCRF §4.24.

251) CCRF §4.26.

252) UNFCCC, Kyoto Protocol,(available at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3145.php).

국가명	의무감축량
Sweden	+4%
United Kingdom	-12.5%
EU-15	-8%

(출처 : European Commission)

EU위원회는 교토의정서의 실행을 위하여 2000년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 I)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ECCP(2000-2004, 이하 ‘ECCP 1’이라 함)는 EU위원회, 회원국들의 전문가, 기업 및 NGO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과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 체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정책적 제안 등을 통해 그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003년에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지침이다.²⁵³⁾ 그리고 ECCP I은 2005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주요 이해관계자회의에서 ECCP II를 운영할 것으로 결정하여,²⁵⁴⁾ 두 번째 ECCP(이하 ‘ECCP II’라 함)는 2005년 10월에 시작되었다.²⁵⁵⁾

ECCP II는 ECCP에서에서 논의된 우선순위의 실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에 대한 EU 프레임 워크 등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CCP II는 ECCP I의 검토,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 등에 대한 6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EU는 ECCP의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에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생겨난 제도가 바로 EU

253) European Union(2003),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254) European Commission, Second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available at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second/index_en.htm).

255)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index_en.htm (최종방문 2013년 6월 13일) 참조.

배출권거래시스템(EU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이라 함)이다. EU ETS는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EU차원의 대응수단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U ETS는 할당된 배출량 중 일부를 거래하는 거래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프로젝트시장과는 다른 시장이다. EU는 EU ETS의 공시에 관한 직접적인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 관련 지침의 범위에 배출권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²⁵⁶⁾ EU ETS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 중개기관 및 사업자는 금융상품시장 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²⁵⁷⁾ 시장남용 지침(Market Abuse Directive),²⁵⁸⁾ 사업설명서 지침(Prospectus Directive),²⁵⁹⁾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²⁶⁰⁾을 준수하여야 한다.

2. EU 지침

(1) 금융상품 지침

금융상품 지침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및 거래의 효율성의 극대화 및 투자자보호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

256) European Commission,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available at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oversight/index_en.htm).

257)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5/611/EEC and 93/6/EEC and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3/22/EEC (이하 ‘금융상품 지침’이라 함).

258) Directive 200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insider dealing and market manipulation (이하 ‘시장남용 지침’이라 함).

259) Directive 2003/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on the prospectus to be published when securities are offered to the public or admitted to trading and amending Directive 2001/34/EC (이하 ‘사업설명서 지침’이라 함).

260) Directive 2004/1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transparenc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formation about issuers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2001/34/EC (이하 ‘투명성 지침’이라 함).

어진 지침으로 2007년 11월에 시행되었다. 금융상품시장 지침은 다자간 거래시스템(Multiple Trading Facility; MTF)의 도입, 시장의 분리와 경쟁촉진, 거래소 집중주의의 폐지와 투명성 제고, 최량집행의무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⁶¹⁾

기후변화관련 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상품 지침 제19조의 업무상 행위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에 따르면 투자회사 등이 고객이나 잠재적인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전문적 지식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금융상품 지침 제19조 제1항). 이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회사와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위험도 경고하여야 한다(금융상품지침 제19조 제3항).

따라서 EU ETS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의 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배출권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들이 배출권이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설명서 지침

앞서 살펴본 금융상품시장 지침은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지 않고,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제공요청을 할

261) 김이수, 투자은행의 자가주문집행(Internalization) 영업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부산대학교 (2009. 10), 92-95쪽; 엄경식/장병훈, 미국주식시장의 재개편:Regulation NMS의 도입 및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7), 61-76쪽; 오성근, EU 자본시장규제의 통합 동향과 시사점, 증권선물 제25호, 한국거래소 (2007. 3), 7-38쪽; 이영철,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기업법학회 (2011), 267-298쪽; 정대익, 독일에서의 투자자보호-자본시장지침(MiFID)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2010), 221-252쪽;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주요내용, 증권선물시장 자율규제리포트, 2007년 가을 제2호 (2007.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5-39쪽.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설명서 지침은 공모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시의무에 관한 지침으로서 기업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지침이다. 사업설명서 지침은 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 그리고 각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설명서 지침에 따르면 사업설명서는 거래시장과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 이익과 손실, 그리고 발행인과 보증인의 전망 등 발행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사업설명서지침 제5조제1항). 또한 사업설명서는 발행회사 및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 및 위험을 전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사업설명서 지침 제5조 제2항).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부속서에서 자세하게 예시를 하고 있고, 부속서는 발행인에 관한 사업설명서에 관한 부속서 I, 등록사항에 관한 부속서 II, 증권관련 사항인 부속서 II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I은 회사의 재무상태, 자본과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정보를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설명서 지침 부속서 I).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에 대해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위험요인인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3) 투명성 지침

사업설명서 지침이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지침이라면, 투명성 지침은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투명성 지침은 증권 등을 상장한 기업들에게 정기재무보고서, 반기재무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 보고서별 기재내용과 공시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지침에 따르면 정기재무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등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내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에는 기업이 직면한 주요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투명성지침 제4조 제2항). 반기재무보고서에는 현재 기업이 직면한 주요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및 회계연도 첫 6개월간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표시하고, 그로 인한 재무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투명성지침 제5조 제4항). 따라서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재무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 7 절 일 본

1. 온난화대책법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직후인 1998년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온난화대책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이후 동 법률은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의 법적 바탕이 되었다. 온난화대책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등 각 경제 주체의 온실가스 삭감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온난화대책법 제3조 내지 제6조)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온난화대책법에 따라 총리대신을 수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온난화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온난화대책법 제21조), 해당 사업자는 온실가스억제와 관련된 사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온난화대책법 제22조). 그러나 온난화대책법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량의 보고는 의무사항이지만, 온실가스억제에 관한 사업 활동 계획의 수립과 공표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2. 환경배려활동촉진법

일본은 기후변화 관련 공시와 관련하여 2003년 ‘環境情報の提供の促進等による特定事業者等の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하 ‘환경배려활동촉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보고서²⁶²⁾의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하였다(환경배려활동촉진법 제9조 제1항). 환경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특정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²⁶³⁾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출연 법인, 대학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한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환경배려활동촉진법 제11조 제1항).

환경보고서에 기재될 사항에 대하여 일본의 환경성은 ‘環境報告書の記載事項等の策定について’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²⁶⁴⁾ 동 가이드라인은 환경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① 사업 활동에 따른 친환경 정책, ② 주요사업의 대응 및 대상 사업연도, ③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배려 계획, ④ 환경배려활동을 위한 체제 및 운영규칙, ⑤ 환경배려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⑥ 제품 등에 관한 환경배려정보, ⑦ 환경 관련 소송사항 및 사업장 주변 주민의 불만사항 등 환경배려활동에 관한 기타 정보 등을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62) 환경배려활동촉진법 제2조 제4항에서는 환경보고서란 어떠한 명칭인지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 그 외 다른 사업자가 사업연도 또는 영업연도의 사업 활동에 관한 환경배려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63) 「環境情報の提供の促進等による特定事業者等の環境に配慮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条第4項の政令で定める法人.

264) http://www.env.go.jp/policy/hairyo_law/formulate_entries.html 참조.

3.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한 공시

이상에서 살펴본 온난화대책법 및 환경배려활동촉진법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주 초점이 지구온난화의 완화 등 공공정책에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들이 장래의 재무상황, 경영실적, 현금 흐름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유가증권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해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일본에서의 기후변동 리스크에 관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현상과 문제-’(2007년 5월 16일), ‘투자자에 대한 제도 공시서류에서 기후변동 정보의 공시에 관한 제언’(2009년 1월 14일), ‘기후변동정보공시에 관한 Q&A’(2009년 5월 19일), ‘투자자에 대한 제도 공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리매김-동향과 과제-’(2010년 3월 24일) 등,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정보공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영향도 있는 탓인지 현행 금융상품거래법의 틀 내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유가증권보고서에서 공시하고 있거나 공시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²⁶⁵⁾ 그러나 아직은 미국처럼 이러한 자율적인 공시를 유가증권보고서와 같은 정부 차원의 기업 공시 시스템으로 편입시키지는 않고 있다.

265) 松苗茂樹・黒須悠子, 有価証券報告書における地球温暖化問題に関する開示事例, RIDディスクロージャーニュース, vol. 11, (2011), 97頁.

제 4 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제 1 절 환경보고서

환경보고서라 함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환경전략, 조직 및 시스템, 성과 등 전반적인 환경경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보고서”이다.²⁶⁶⁾

환경부는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시작하여²⁶⁷⁾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까지 작성한 상황이다.

1. 작성원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성, 신뢰성, 명료성, 비교가능성, 시기적절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이라는 6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²⁶⁸⁾

적합성은 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인식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기에 적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선정하여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이해한 후 이에 적합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업종별 특성 및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재항목의 모든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6)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7.11), 9쪽.

267) 환경부,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방법 개발 (2000), 참조.

268)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주266), 15쪽.

신뢰성은 보고서에 기재한 정보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방법, 조직 내부의 자체적 감사 또는 독립된 제3자의 검증을 받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명료성은 환경보고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이용자가 읽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읽고 싶다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간결한 문장과 문체, 그래프와 사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가능성은 환경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가 기업 간 또는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방법, 업종별 공통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정보를 측정 및 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시의 적절성은 환경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 시기에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검증가능성은 환경보고서 상 자료 및 정보가 현존하는 기술로 객관적·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작성절차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환경보고서 작성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로 작성조직을 조직하고, 작성대상의 범위 및 작성기간을 설정하며, 작성내용의 범위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즉 정보이용자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성 높은 환경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

정이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정보 공개분야 및 항목을 참조하여 환경비전 및 전략 시스템으로부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자료, 그로 인한 환경영향 및 절감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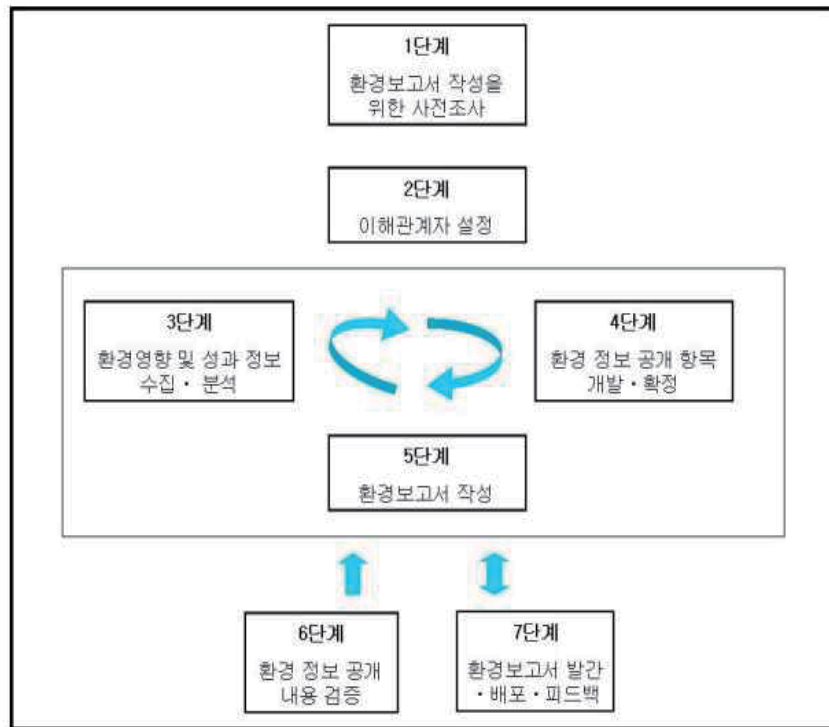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환경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할 항목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확정한다.

5단계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가공하여 구체적으로 환경보고서를 작성한다.

6단계에서는 환경보고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7단계에서는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배포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해에 환경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의 작성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7. 11, 17쪽.

3. 기후변화 관련 작성내용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자원, 용수, 에너지, 오염물질, 환경친화제품 등 기업의 모든 환경관련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2.4.4 기후변화 대응’ 항목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① 과거 3~5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톤) 또는 원 단위, ② 향후 2~5년 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개선계획, ③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④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예를 들어, 직접-온실가스 배출시설 설비 등, 간접-카플제도 등), ⑤ 기후변화 관련 신사업 추진 활동 등의 내용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나 그래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²⁶⁹⁾

269)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주266), 48쪽.

4. 문제점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관련 방침, 목표, 성과 등을 알리는 공시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환경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항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활동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작성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현황작성에 그치고 있을 뿐 기후변화가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적, 물질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공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 2 절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환경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과정으로 2007년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²⁷⁰⁾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70) 환경부,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12).

1. 환경정보 공개 대상

2010년 11월에는 녹색기업지정제도²⁷¹⁾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당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던 187개 기업에 대하여 2009년 환경정보 공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2011년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녹색기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 및 공개 대상범위를 확장하였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경정보의 공개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등이 포함된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2. 환경정보 공개·검증절차

환경정보를 공개해야하는 기업 등은 녹색경영 활동 및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환경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등록대상인 환경정보는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환경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그리고 환경부는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환경정보공개 항목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이하 ‘등록매뉴얼’이라고 함)’을²⁷²⁾ 작성

2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하여 배포하고 있다. 등록매뉴얼에 따르면 공개의무자의 특성별 분류에 따라 각기 공개항목과 공개의 의무·자율 여부를 반영하여 환경정보공개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항목>

(● 의무, ○ 자율)

구 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1. 기업개요	1. 사업현황	●	●	●	●	●	●
	2.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	○	○	○	○
2. 녹색경영 시스템	1.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	○	○	○	○
	2.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	●	●	●	●	●
3. 자원·에너지	1.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2.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	-	-	-	-	●
	3. 용수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	●	●	●	●	●
	4.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	●	●	●	●
	5.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4. 온실가스· 환경오염	1.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2.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	○	○	○	○	○
	3.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4. 환경오염 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	○	○	○	●
	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	-	-	-	●
	6.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	○	○	○	●
	7.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	●	●	●	●	●	●

272)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2012).

제 4 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구 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활용량						
	8.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원단위	●	○	○	●	○	●
	9.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	-	-	-	○
5. 녹색제품·서비스	1.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2.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	-	-	-	○
	3.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	○	-	-	-	-	○
	4.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	○	○	○	○
	5.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	○
	6.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	○
6. 사회·윤리적 책임	1.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	●	●	●	●
	2.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	○	○	○	○	○
	3.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	○	○	○	○	○

* 출처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2012), 4쪽.

매뉴얼 상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은 ‘4. 온실가스·환경오염’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제3자 검증여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세부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연간 배출량을 직접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계획-실적 관리(예시)>

No.	목표	세부계획	실적
1	'10년 대비 20% 감축 (감축량 : 1,000CO2ton)	- 연료 대체(병커C유→LNG) - SF6 등 온실가스 미사용 - 폐열, 스팀 회수 설비 도입	1,500CO2 ton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예시)>

△△사는 2011년 1월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1년 6월까지 직접배출량(scope I)²⁷³에 대해, 오는 2012년 까지는 간접 배출량(scope II)²⁷⁴, 간접배출량(scope III)²⁷⁵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기업 등의 소속사업장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3 kilotonnes CO₂-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4. 문제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위의 작성 예시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3) 직접배출량(scope I: 고정연소배출, 공정배출, 이동연소배출, 탈루성 배출)

- 전기/열/스팀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제품 제조 시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원재료/제품/폐기물/임직원 등 이송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HFC에 의한 배출 등.

274) 간접배출량(scope II: 전력구매배출, 스팀구매배출)

- 전기, 스팀 등 외부에서 구매되어 들어오는 에너지원에 의한 배출.

275) 간접배출량(scope III: 기타간접배출)

- 임직원 출퇴근, 국내외 출장, 제품사용 및 최종폐기에 의한 배출 등.

제 4 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온실가스과 관련된 현 상황 및 계획에 대한 공개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환경정보의 공개는 작성기준년도에 즉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년 3개월 이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5 장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제 1 절 제도 도입의 정당성

2010년 1월 27일에 미국의 SEC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는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공시의무에 관하여 연방증권관계법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이나 등록인들(registrants)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해석지침(the Interpretive Release)을 승인한 바 있다.²⁷⁶⁾ SEC위원들이 3:2로 통과시킨 이 해석지침은 SEC에 대해 그러한 지침을 채택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대규모 기관투자자연합이 결성된 지 거의 3년이 흘러서야 나왔다.²⁷⁷⁾ 이와 같이 청원을 처리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다는 사실과 투표를 함에 있어서도 만장일치로 가지 못하고 의견이 갈라졌다는 점은 기후변화 공시 문제에서의 SEC의 역할과 해석지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이 논쟁을 초래할만한 것들임을 잘 나타내주는 징표라 하겠다.²⁷⁸⁾

특히 반대하는 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복잡다기하여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계량화가 어려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²⁷⁹⁾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276)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Exchange Act Release No. 61,469, 75 Fed. Reg. 6,290,(Feb. 8, 2010)(<http://www.sec.gov/rules/interp.shtml>).

277) Petition for Interpretive Guidance on Climate Risk Disclosure, No. 4-547, 2 (Sept. 18, 2007)(<http://www.sec.gov/rules/petitions/2007/petn4-547.pdf>. John M. Broder, S.E.C. Adds Risk Related Climate to Disclosure List, N.Y. TIMES, Jan. 28, 2010, at B1).

278) Interpretive Release, supra note 276, at 6, 290-291.

279) Camden D. Burton, An Inconvenient Risk: Climate Change Disclosure and the Burden on Corporations, The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62, no. 4, at 1290 (2010); Gary Shorter, SEC Climate Change Disclosure Guidance: An Overview and Congressional Concerns, CRS Report for Congress (May 24, 2012), at 4-6.

영향력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는 자들은 현행 규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⁸⁰⁾

한편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점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 도입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거부감은 비용의 문제와 기후변화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경영진의 무관심,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과민반응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결과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⁸¹⁾

그러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공시제도의 존재 의의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사기적 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은행 예금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자본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법적 장치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고도로 발달된 자본시장은 즉시 정보를 흡수하고, 정보에 밝은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해 투자 판단을 내리며, 그 가치가 반영된 금융상품에 그들의 자금을 유리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각각의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투자를 꺼릴 것이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평균적인 가격 및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은 가격 및 조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이유로 자금조달을 기피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만이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은 시장을 외면하게 되

280)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GAO-04-808, Environmental Disclosure: SEC Should Explore Ways to Improve Tracking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3, 14 (2004) (<http://www.gao.gov/new.items/d04808.pdf>).

281) 자세한 내용은 한철, 지구기후변화와 기업의 환경공시책임, 경영법률, 제21집 제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1), 252-254쪽 참조.

고, 효율적인 자금배분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²⁸²⁾

그러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가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투자를 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조문 인용 시에는 ‘법’이라 함) 제1조가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 규제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보호이며,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촉진”,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나 수단, 혹은 간접적인 목적에 불과한 것이다. 요컨대, 기업공시는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보호에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인에는 기업이나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근로자 등도 포함되지만 공시제도가 시장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똑같이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²⁸³⁾ 다시 말해, 공시제도의 목적을 기업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을 동일한 견제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공시의 기능은 투자가치판단 자료의 제공과 공정성 확보, 권리의 실질화와 지위의 평준화 기능, 경영진의 근면성과 정직성 담보기능, 투자자의 자신감 제고 기능,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치유기능을 가지고 있다.²⁸⁴⁾ 결국 공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의 근면성과 정직성 담보기능이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치유기능도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SEC가 등록인들에게 SEC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정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환경 법률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²⁸⁵⁾ 2010년의

282) 서완석, 앞의 책(주3) 18-19쪽 참조.

283)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2-283쪽.

284) 서완석, 앞의 책(주3), 35-41쪽 참조.

해석지침은 SEC가 환경공시에 관한 해석지침을 처음으로 내놓은 후 거의 30년이 되어서야 나온 것이다.²⁸⁵⁾ 1971년 이후로 미국의 연방정부와 수많은 주들, 그리고 국제사회는 감지되고 있고, 점차 인식되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조치들을 내놓았다.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협정, 유럽연합의 배출거래제도와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²⁸⁷⁾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화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온난화 해결법[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a.k.a. AB32)]’과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보호법 [Sustainable Communities and Climate Protection Act of 2008(Senate Bill 375: SB 375)]’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북동부와 동부에 있는 주들로 구성된 ‘지역 온실가스 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몇몇 서부에 있는 주들과 캐나다 지역의 주정부들로 구성된 ‘서부 기후계획(the Western Climate Initiative)’, 그리고 몇몇 미국의 주와 캐나다 주정부로 구성된 ‘동서부 온실가스 감축협정(the Midwestern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 등이 그것들이다.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신규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온실가스를 동법상의 ‘대기오염물질’로 보았다. 그리고 동 판결의 후속조치로서 2009년 말에 EPA는 적절히 배합된 온실가스의 높아진 대기에서의 농도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285) Disclosures Pertaining to Matters Involving the Environment and Civil Rights, Exchange Act Release No. 5170, 1971 WL 127132 (July 19, 1971).

286) Interpretive Release, supra note 276, at 6,290-91.

287) Id. at 6,290, 6,296.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포괄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입법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행위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본다.²⁸⁸⁾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일 뿐인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감지되고 있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후변화 공시 시스템의 도입은 일부 선진국이 처리해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후에 가서야 논의해보자며 제쳐 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제 2 절 공시 주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기업에게 규제적, 물리적, 사업적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리스크의 부담 정도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 어떠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업의 사업체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업의 주된 고객층이 기업의 평판에 민감한지 등에 따라 다르다.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앞서 CDSB의 CCRF 및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의 간접배출량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기후변화 리스크는 규제리스크 뿐만 아니라 물리리스크, 사업리스크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288) 현재 미의회에 제출된 법안 리스트에 대해서는 U.S. Climate and Clean Energy Policy, Pew Ctr. on Global Climate Change, <http://www.pewclimate.org/federal> (최종 방문 2013. 6.15)참조.

나 모든 기업에게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며, 가족기업 등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 물론 자율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시업무 및 관련 비용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범위를 적정한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완전공개가 필요한 기업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공시의무를 상장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이다. 그렇다면 모든 상장법인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상장법인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장법인에게 관련 업무 및 비용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장법인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공시의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공시대상 정보

1. 중요성 요건

중요성의 개념은 발행인들이 공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및 현재의 상황으로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hard information**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식별하기 위한 시간이 필

요하고,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측에 의존하며, 신뢰성이 적은 soft information, 즉 예측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BAU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정도와 대책,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손익,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과 예방비용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면, 정보의 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투자자는 과도한 정보로 인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CCSB가 CCRF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 및 중복된 정보 등 중요성을 결여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도록 한 것도²⁸⁹⁾ 그 때문이다.

중요성의 기준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판시하고 있다.²⁹⁰⁾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법정하고, 기재의 누락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도 중요사항에 해당하여야만 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조문 상에 명확히 해놓고 있다(법 제47조 제3항).

그러므로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였더라도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증권신고서 상의 중요한 사실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침탈된 재산 또는 그 가액을 회복하기 위해 소인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부실기재를 신뢰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²⁹¹⁾

289) CCRF 3.24.

290) Basic v. Levinson, 485 U.S. 224, 237-40 (1988).

291) Larry D. Soderquist, Securities Regulation, The Foundation Press, Inc., at 248 (1994);

예를 들어, 정책 설명은 강제적 공시사항으로 중요성 기준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의 공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성 기준의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보 중에서 투자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경영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공시원칙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강제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²⁹²⁾

2. 공시 범주

앞에서 본 미국의 경우와 같이 CERES가 정한 범주는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SEC의 해석지침을 참고하여 금융위원회가 적절히 재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술로도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지만 그로 인한 리스크가 모두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관련 규제는 규제의 적용 이전단계부터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고, 기업에게 할당되는 탄소배출권의 경우에는 기업이 확실하게 부담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리스크 및 소송리스크는 매우 유동적이기

서완석, 앞의 책(주3), 284쪽.
292)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4-285쪽.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중 어느 범주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CERES 보고서, SEC의 해석지침, 그리고 CDSB의 CCRF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CERES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정책, 온실가스배출정보 및 관리정보, 기후변화관련 기업통제, 물리적 리스크와 대처방안, 규제리스크, 시나리오 계획안 등을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SEC의 해석지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사업의 설명, 새로운 판결례나 심결례 등으로 인하여 증대한 기후변화관련 소송리스크,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신뢰한 기후변화, 위험요인 등의 정보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SEC의 해석지침은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을 공시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ERES 보고서에 비하면 공시의무가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CRF는 기업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기업의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며, 기업에게 공시할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SEC의 해석지침보다도 그 범주가 더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CERES 보고서와 같이 공시 범주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CCRF처럼 공시내용의 선택을 기업에게 맡기면 기후변화 공시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SEC의 해석지침, 기후변화 관련 규제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기후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과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적 판단도 함께 공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4 절 공시 방법

1. 강제적 공시와 자율적 공시

혹자는 기후변화 위험 공시제도가 단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규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스템일 뿐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²⁹³⁾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ERES 보고서나 기후리스크 청원, SEC, 그리고 미연방대법도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듯하다. 다만 CERES 보고서는 자율적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고, 기관투자자 모임, 정부 관리, 변호사, 환경 단체, 그리고 비영리 그룹들은 기후변화리스크 청원에서 SEC에게 Regulation S-K의 101조, 103조, 그리고 303조를 포함한 현행 강제공시 규정과 규칙들에 따라 기후변화문제 보고를 위한 문제의 해석지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SEC 규정은 회사들에게 정기보고서에 예측이나 예상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청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후변화를 공시함에 있어 자율공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아직 신뢰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그러한 강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⁹⁴⁾

293) 예를 들어, David W. Case,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as Informational Regulation: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76 U. Colo. L. Rev. 379, 380 (2005).

294)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8쪽.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업보고서, 주요 사항 보고서 등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강제공시사항이지만 예측정보는 자율공시사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경영진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실과 과거 및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물리적 위험과 같은 hard information은 강제공시 사항이지만 시나리오 계획안과 같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 soft information은 강제공시사항으로는 적절치 않고 자율적 영역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증권신고서에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점에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면책조항을 이용하여 예측 정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²⁹⁵⁾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면책조항을 이용하여 나중에 예상한 바와 실제 결과가 다르더라도 책임을 질 일이 없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정보는 예측에 불과하다는 주의 문구를 읽었기에 완전한 신뢰는 하지 않으면서도 궁금한 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시 내용과 용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략하며, 명확해야 하고, 일관성, 중요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사결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라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중립적으로 보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일관성이 있고, 정보 이용자가 두 가지 경제 현상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²⁹⁶⁾

295) 위의 논문, 288쪽 참조.

296) 서완석, 앞의 책(주3), 58-59쪽 참조.

그런데, 미국의 Regulation S-K의 103조는 중대한 소송 및 행정쟁송에 관한 항목으로서 계류 중인 중대한 소송 절차에 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행인은 기업과 자회사 연결자산(consolidated assets)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는 그 규제 대상의 분산성 때문에 과거의 환경규제와는 달리 top-down방식의 규제 로 효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²⁹⁷⁾ 등을 예로 들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가 법적 의무로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Regulation S-K의 103조는 계류 중인 중대한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며, 민간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집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왜 이러한 자율적 공시 시스템이 정부의 기업공시 시스템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는지의 여부와 왜 CERES가 미국의 기관투자자들, 자산운용사 및 주정부 기관들과 연합해서 SEC에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지도지침을 발표하도록 청원하였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면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²⁹⁸⁾

또한 SEC가 해석지침을 내놓은 근본적인 목적도 “기업들에게 현행 연방증권관계법과 규정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키고, SEC에게 제출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공시서류를 준비할 때 기후변화와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이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환경정책

297) 김도요, 기후변화 위험의 대처와 정보공시제도의 발전-미국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Releas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식/자료 (2010. 11. 18)

298)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9쪽.

에 관한 자율적 공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점은 강제공시의 필요성이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본다.²⁹⁹⁾ 다만 자율적 공시가 필요한 영역도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공시채널

미국에는 CDP나 GRI 등과 같은 다양한 공시채널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가 증권공시 시스템 밖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투자자들이 이러한 자율적 공시 시스템을 정부의 기업공시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자율공시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보다는 기업의 이익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라든지, 집행기능의 미약이나 기업의 자율규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할 경우 투자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거나 공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³⁰⁰⁾ 그렇지만 자율규제의 경우, 앞에서 말한 사적 이익 극대화 도모, 집행능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 외에도 자율규제 비준수회사(Bad actors)가 규제 준수회사(Good actors)로 인한 업계평판 등에 아무런 비용지급 없이 편승함으로써 자율규제 준수유인이 저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인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규제준수회사가 비준수회사에 비해 영업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회사들이 자율규제준수보다는 규제회피를 선택함으로써 무질서가 초래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

299) 위 논문, 289쪽.

300) 2010년에 진행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2010 서명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534개이며, 우리나라 금융기관 21개도 포함되어 있다(한겨레신문, 2010. 8. 30 기사 참조).

성이 있다. 또한 공시채널이 너무 다양하면 기업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공시정보가 불투명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기후변화 공시시스템과의 연계

현재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정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업체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 등은 공개가 원칙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³⁰¹⁾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 공개심사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명세서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는 현재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명세서의 주요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현재는 주요내용에 매출액,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 사용량만이 공개되어 있지만,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목표 감축량, 이행한 양 등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업체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할 때 현재의 기후변화 공시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301) <http://www.gir.go.kr/og/hm/gs/a/OGHMGSA010.do>.

제 5 절 공시대상 서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시장에서는 규제당국이 증권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를 감독한다. 이러한 공시규제의 밑바닥에는 일반 투자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왜냐하면 공시규제는 어떤 형태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킬 것만을 요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증권을 매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다만 그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행시장은 공시서류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발행시장 규제는 발행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며 (법 제120조 제1항), 그때서야 비로소 모집·매출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집·매출을 위하여 발행인이 작성하는 투자권유문서를 투자설명서라 하는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될 뿐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감독 당국이 증권신고서 상의 정보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경우, 비로소 그 정보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담아 투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공시 시스템 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기업이 취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소송관련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 공시는 크게 정기공시, 수시공시,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공정공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기공시는 다시 공시대상 기간 및 제출빈도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로 정기공시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보고서가 제격일 것이다. 수시공시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³⁰²⁾

유통시장에서의 기후변화 공시내용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나 기후변화로 인해 회사가 가지게 될 기회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1. 증권신고서에의 기재

주권 등 종래의 전형적인 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공모에 관한 사항과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영 제125조 제1항 제3호), 발행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에 관한사항,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등의 *hard information*에 기후변화 공시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³⁰³⁾ 그리고 공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모증권의 권리내용과 투자위험요소가 포함되는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에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119조 제3항).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사항 중 앞에서 말한 *soft inform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02) 이상,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5쪽.

303)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5쪽.

기업의 재무에 관한 수익상황을 정확히 공시하여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공시의 제1의 역할일 것이지만 장래의 위험(soft information)을 공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과거의 실적보다 장래에 예상되는 영업실적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예측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기관투자자와 같은 노련한 투자자와 정보접근성이나 정보 분석능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긴다.

예측정보의 범위는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를 받은 사항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 제123조). 예측정보는 자칫 발행인에게 무분별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119조 제3항 후단).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거나,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거나,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고,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Safe Harbor Rule)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 리스크는 계량화가 무척 어려우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칙을 이용함으로써 면책을 받을 수 있고 남소의 위험도 줄어둘 수 있을 것이다.

2. 투자설명서에의 기재

투자설명서 본문에는 증권 종류에 따라 증권기재신고서에 기재되었던 내용이 들어간다(영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법 제123조 제2항). 따라서 기후변화 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사항은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정기공시제도를 이용한 기재

유통시장에서의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기업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공시대상기간 및 제출빈도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로 구분된다.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159조 제2항, 영 제168조 제2항 제7호), 과거 및 현재의 상황으로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hard information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또한 예측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데(법 제159조 제6항),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는 증권신고서의 경우와 같다.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예측정보, 대표 이사 등의 확인·검토의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를 준용하고 있다(법 제160조 후단, 영 제170조 제1항).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4. 주요사항보고서에의 기재

비정기공시(수시공시)는 기업의 경영활동,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정기공

시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수시공시 항목 중 공적 규제 항목을 분리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신설하고, 수시공시제도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였다. 주요사항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Current Report, 일본의 임시보고서에 해당하는데, 기업의 경영활동,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분증권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는 주요사항보고서의 대상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61조 제1항, 영 제171조 제2항 제2호). 미국의 경우에 Regulation S-K의 103조는 중대한 소송 및 행정쟁송에 관한 항목으로서 계류 중인 중대한 소송 절차에 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회사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³⁰⁴⁾

한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의 경우에 이를 주요 경영사항이라 하여 [제3호 다목(2)] 소송이 제기된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송일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굳이 공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한명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역 또는 국가단위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의 범위가 재산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생존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소송가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태안에서

304) 서완석, 앞의 논문(주27), 287쪽.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13년 1월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의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천138억73만1천359원, 해양복원 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은 1천844억6천413만6천498원, 방제비용이 1천300여억 원으로 총 피해금액을 7천341억4천383만3천31원을 인정하였다.³⁰⁵⁾ 이 사건에서 IOPC펀드는 피해금액을 1천824억여원을 산정하였었고, 피해주민들은 법원에 12만7천483건, 금액은 4조2천271억4천848만8천408원을 제한채권으로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후변화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공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절 제도 도입의 방법

1. 유권해석에 의한 도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SEC가 해석지침을 이용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SEC의 유권해석은 증권관계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며, 관련부서별로 법령 및 특정 당사자 관련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이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공개 된다.³⁰⁶⁾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집행작용은 각 법령에 따라 각 행

305) 연합뉴스 2013년 1월 16일 기사참조.

306) <http://www.sec.gov/interp.shtml>.

정기관이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집행권한에 근거하여 행정해석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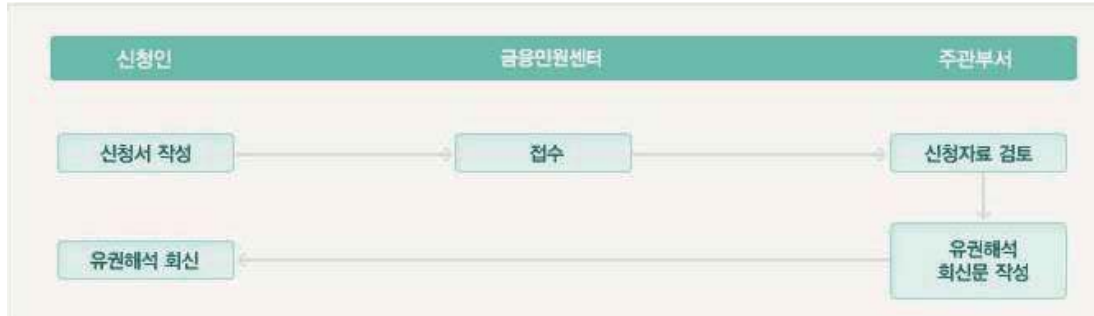
그러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에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부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업계가 따라야 하는 실질적인 법규의 내용인 것은 확실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강제할 만큼의 충분한 규범력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법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유권해석은 법의 힘을 빌리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실 상황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미국 SEC의 유권해석만큼 일관성 있고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가이드라인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절차에 있어 아래의 도식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권해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기업 등의 신청이 없이는 유권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권해석 업무절차 흐름도>



*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기업들이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후변화리스크 공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업들마다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기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이 작성하는 제반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증권이 모집 및 매출 시에는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투자위험요소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투자위험으로 구분되어 있다(작성기준 제2-3-1조). 사업위험은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 업종 및 영업의 특성에 따라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으로(작성기준 제 2-3-1조 작성지침)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³⁰⁷⁾

그러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

307) 금융감독원,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인 (2007.11.26.) 11쪽.

인’은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공시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리스크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법과 현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기업 간에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공시 가이드라인에는 ① 기후변화 리스크의 유형 및 영향, ②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전략, ③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이 필수적인데, 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의 재무적 상황과 연결되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의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1절 일반원칙	제1절 일반원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제1-1-2조(용어의 정의)
(중략)	(중략)
36.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36. “기후변화”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신설>	37.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기준 신설 >
제4장 사업의 내용
제2절 제조·서비스업
제4-2-2조(사업의 개요) ①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기후변화 관련성 (생략)
제4-2-12조(그 밖에 투자이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략)
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를 통해 회사가 처할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기재하고, 향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를 기재한다.
제6-2-3조(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① 중략
【 작성지침 】
i (중략)
차.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회사가 처할 위험과 기회에 관한 사항
제6-2-6조(그 밖에 투자이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본의 조달과 지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중략)
5.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제26장 기후변화위험 공시기준
제1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제26-1-2조(대응전략) ① 회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대응전략에는 ‘제6장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작성된 경영진의 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 작성지침 】

- i. 대응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발생위험 : 회사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험의 유형 및 그 영향의 개요
 - 나. 회사의 목표 :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추진계획
 - 다. 과거실적 및 미래전망 :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향과 요소 등 과거실적 및 회사의 미래전망
- ii.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된 회사의 책임자, 전략의 총괄기구 등 전략의 실행을 위한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기후변화위험

제26-2-1조(기후변화시나리오) ① 기후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기후변화시나리오는 기상청 등 신뢰도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사업 활동 지역 및 진출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 ③ 기후변화 시나리오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 등 회사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④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널리 통용되는 용어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체하기 어려운 용어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 】

예상시나리오는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형적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2-2조(기후변화위험) ① 기후변화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상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제위험, 물리적 위험, 기타 기후변화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중요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 ② 기후변화위험은 단순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기업의 재무적 상황과 연결하여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기후변화위험은 각 위험별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기후변화위험은 규제위험, 물리적 위험, 기타 기후변화위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규제위험 : 국제협약 및 국·내외 규제로 인하여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 ex) 탄소배출권거래, 외국의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 등
 - 나. 물리적 위험 : 사업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환경의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 ex)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공장의 이전, 기온상승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 생태계질서 혼란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및 생산 차질 등
 - 다. 기타 기후변화위험 : 규제위험 또는 물리적 위험 외의 위험으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ex)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당한 위험, 기후변화 대응미흡으로 인한 기업평판의 하락 등
- ii. 기후변화위험은 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절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 제26-3-1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구분 및 종합하여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온실가스배출량은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직접배출 : 사업장 운영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 나. 간접배출 : 임직원의 출장 등 생산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
- ii.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기 관	배출량	
모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	배출량의 100%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공동사업	지분 X%에 따라 배출량의 X%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주식보유	주식소유의 X%에 따라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총량	합계	총 직접배출량
		총 간접배출량

iii. 온실가스배출량에 관한 구체적인 명세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연동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기재할 수 있다.

제26-3-2조(배출권거래제 참여회사)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회사는 배출권 할당량 및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회사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 및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재무정보와의 연계

제26-4-1조(기후변화위험 등) ① 회사는 기후변화위험 등으로 관한 정보를 재무정보로 변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위험 등의 정보를 재무정보로 변환할 때에는 신뢰성 있는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변환된 기후변화 위험등의 정보는 재무제표 등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위험 등의 기재란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제 6 장 맺음말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빙하기를 다룬 영화이다. 영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상력이 낳은 산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영화에서 나오는 남극 빙하의 균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월 말부터 3월까지 남극에서 넓이가 대략 3200km²인 라센 빙붕(Larsen Shelf)이 균열된 적이 있는데, 넓이가 2590km²인 룩셈부르크와 비교하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2010년의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이상한파로 인한 피해, 2011년에 있었던 인도 한파, 최근 잦아지고 있는 미국의 토네이도, 사라지는 북극의 빙하, 우리나라의 이른 장마와 국지성 호우 등 평년과 다른 기상현상이 관측되는 것을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판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미래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로 명시했다. 영국에는 ‘기후·에너지 안보대사’가 별도로 있으며, 2009년 국방부와 외무부는 기후와 에너지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 대사관에 기후 안보 부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최근 ‘에너지 안보’, ‘기후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면서, 기후 변화가 ‘주권’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³⁰⁸⁾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이미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느끼고,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1992년 브라질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발자국 등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변화 속

308) <http://www.ildaro.com/newnews/print.php?uid=6107> 참조.

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에너지절약, 재활용 분리수거, 탄소발자국 등 국민들의 반응이 필요한 제도도 있지만, 탄소배출권 할당제 등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규제하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적인 배출량이 가정보다 기업이 많은 것도 그 이유이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한 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지만, 관련 규제는 개인보다 기업에게 크게 작용한다. 앞에서 살펴본 규제리스크, 소송리스크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사회단체들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환경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기업의 주주나 잠재적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기업의 사업 활동에 어떠한 미치는지, 그 재무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지,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책이 기업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이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당해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진실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책임 아래 가장 합리적으로 투

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단순히 현황을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그 영향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시스템의 도입을 늦출 이 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2011)
- 금융감독원,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인 (2007)
- 기상청, 한국기후변화백서 (2011. 12)
- 김경환, 국내외 탄소라벨링 현황과 전망, Global Green Growth Policy 제39호, 국가환경정보센터 (2011).
- 김도요, 기후변화 위험의 대처와 정보공시제도의 발전-미국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Releas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식/자료 (2010)
- 김이수, 투자은행의 자가주문집행(Internalization) 영업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부산대학교 (2009)
- 박규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박태주,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주제발표, (2009)
-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기업법학회 (2011)
- 서완석,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 엄경식·장병훈, 미국주식시장의 재개편: Regulation NMS의 도입 및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2007)

참고문헌

- 오성근, EU 자본시장규제의 통합 동향과 시사점, 증권선물 제25호, 한국거래소(2007. 3)
- 이소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 이영철,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기업법학회(2011)
- 이재호, 태국 대홍수의 피해현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5 no.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장현숙·조성대·김우중,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 9 no.19, 국제무역연구원, (2010)
- 정대익, 독일에서의 투자자보호-자본시장지침(MiFID)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2010)
- 정희식, 태국 홍수와 자연재해 대응 체제 구축의 중요성, 자동차 경제 제446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1.12)
- 최중서,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자발적 환경공시의 내용분석: 환경성과 및 경제적 성과와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주요내용, 증권선물시장 자율규제리포트, 2007년 가을 제2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라벨링 국제동향 보고서 (2012. 1)
- 한 철, 지구기후변화와 기업의 환경공시책임,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1)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사법 제21호,
사법발전재단 (2012)
- 홍일선, 그린 SCM이 지속가능 기업의 경쟁력,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1)
-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7)
- 환경부,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 환경부,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방법 개발 (2000)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2012)

2. 외국문헌

- ABA, 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Lawyers Response to Auditors
Requests For Information, 31 Bus. Law. 1709 (1976)
- Am. Law Inst., Climate Risk Disclosure by the S&P 500, 186 (2007)
- Camden D. Burton, An Inconvenient Risk: Climate Change Disclosure
and the Burden on Corporations, The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62, no. 4, (2010)
-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Supply Chain Report (2011)
- CDP,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2
- CSA, CSA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2010. 10. 27)
- Cynthia A. William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Corporate Social Transparency, 112 Harv. L. Rev. (1999)

참 고 문 헌

- David A. Grossman, Warming up to a not-so-radical idea: Tort-based climate change litigation, 28 Column. J. Envtl. L. 1. (2003)
- Ernst & Young, Action amid Uncertainty-The business response to climate change- (2010. 6)
- Gary Shorter, SEC Climate Change Disclosure Guidance: An Overview and Congressional Concer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 IPCC. Working Group II,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he 4th Assessment Report (2007)
- Jeffrey M. McFarland, Warming up to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Fordham J. Corp. & Fin. L. (2009)
- Kimberly O'Neill Packard & Forest L Reinhardt, What Every Executive Needs to Know About Global Warming, Harv. Bus. R. (2000)
- Larry D. Soderquist, Securities Regulation, The Foundation Press, Inc. (1994)
- Nicholas Stern,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10)
- Sherry Towers · Gerardo Chowell · Rasheed Hameed · Matthew Jastrebski · Maryam Khan · Jonathan Meeks · Anuj Mubayi · George Harris, Climate change and influenza: the likelihood of early and severe influenza seasons following warmer than average winters, PLOS Currents Influenza (2013)
-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GAO-04-808, Environmental Disclosure:

SEC Should Explore Ways to Improve Tracking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2004)

Wellington F., and A. Sauer, Framing Climate Risk in Portfolio Management,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2005)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Exchange Act Release No. 61,469, 75 Fed. Reg. 6,290, 6,290 (Feb. 8, 2010)(<http://www.sec.gov/rules/interp.shtml>)

Petition for Interpretive Guidance on Climate Risk Disclosure, No. 4-547, 2 (Sept. 18, 2007)(<http://www.sec.gov/rules/petitions/2007/petn4-547.pdf>. John M. Broder, S.E.C. Adds Risk Related Climate to Disclosure List, N.Y. TIMES, Jan. 28, 2010, at B1)

Camden D. Burton, An Inconvenient Risk: Climate Change Disclosure and the Burden on Corporations, The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62, no. 4, at 1290 (2010); Gary Shorter, SEC Climate Change Disclosure Guidance: An Overview and Congressional Concerns, CRS Report for Congress (May 24, 2012)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GAO-04-808, Environmental Disclosure: SEC Should Explore Ways to Improve Tracking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3, 14 (2004) (<http://www.gao.gov/new.items/d04808.pdf>)

Disclosures Pertaining to Matters Involving the Environment and Civil Rights, Exchange Act Release No. 5170, 1971 WL 127132 (July 19, 1971)

U.S. Climate and Clean Energy Policy, Pew Ctr. on Global Climate Change, <http://www.pewclimate.org/federal>

참 고 문 헌

David W. Case,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as Informational Regulation: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76 U. Colo. L. Rev. 379, 380 (2005)